

군산시 공고 제 2016-1860호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 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01일

군산시장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 용어 정비 및 군산시 장사등에 관한조례 중 일부 조항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정비 필요
- 나.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이 규제 개혁에 해당되어 정비 필요
- 다.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항 중 공설묘지 분묘의 설치기준이 모호하여 신설
- 라. 현역군인 복지, 예우 증진을 위해 복무 중 사망 시 화장비 면제를 위한 조례 신설
- 마. 군산시 화장시설, 추모관, 공설묘지 사용료를 전국 평균 및 도내 사용료 등과 적합하게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 가.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이 상위법 및 규제개혁에 해당되어 일부조항 개정
- 나.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 신설
 - 제13조(공설묘지 분묘의 설치기준)3항 공설묘지 들레석은 세로2m 가로 1m 이내이며 비석도 1m 이하로써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 제21조(사용료 감면) 제1항 현역군인 및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전액 면제 한다.
- 다. 군산시 화장시설, 추모관, 공설묘지 사용료를 전국 평균 및 도내 사용료 등과 적합하게 개정(별표1, 2, 3)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11월 21일까지 군산시장(참조 : 복지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화, 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 1) 주소 : (우)54078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복지지원과
 - 2) 전화 : 063-454-7952
 - 3) 팩스 : 063-453-4056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복지지원과(전화 : 063-454-795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정의)는 삭제한다.

제8조(허가취소)는 삭제한다.

제9조(명칭 및 위치) ①“군산시 공설묘지의 명칭은 군산시 공원묘지(이하“공원묘지”라 한다)라 칭한다”를 “군산시 공설묘지(이하“공설 묘지”)”라 칭한다.

②“공원묘지”를 “공설묘지”로 한다.

제10조(사용) ①“공원묘지”를 “공설묘지”로 하고 “사체를”을 “시신을”로 한다.

③“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를 “공설묘지 사용 계약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마다 재계약 하고 60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로 한다.

제11조(자격) “공원묘지”를 “공설묘지”로 한다.

-----“군산시인 자에 한하여”를 “군산시민 인자에 한하여”로 한다.

제13조 ③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분묘의구조) “분묘의구조”를“공설묘지 분묘의 설치기준”으로 한다.

② -----“ 사망자의 성명 등을 표기한 묘비를 설치 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를“사망자의 성명 등을 표기한 묘비를 설치 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묘지둘레석은 세로2미터 가로1미터 이내이며 비석은 1미터 이하로써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제15조(묘지사용권의 승계) “묘지사용권의 승계”를 “공설 묘지 사용권의 승계”로 한다.

①은 삭제 한다.

②“호주상속자가 없을 경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9호의 연고자 순위에 의한다”를 “공설묘지 사용권의 승계는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의 권리,의무 순위에 따른다.”로 한다.

제16조(사용료 및 관리료) “사용료 및 관리료”를 “사용료”로 한다.

①“공원묘지”를 “공설묘지”로 하며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를 “공설묘지 사용료”로 하고 “묘지사용 연장”을 “묘지 재사용 계약”으로 한다.

제17조(사용신고 취소)는 삭제한다.

제19조(사용신고) ①“승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사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1호 서식 시체 매·화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사 등에 관한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1호 서식 시신, 개장유골 화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은 삭제한다.

제20조(사용료)“승화원”을 “화장시설”로 한다.

제21조 ①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사용료감면) ①“현역군인 및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25조(봉안기간) “봉안기간”을 “봉안 사용기간”으로 한다.

① 유골의 “봉안기간은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준하여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를 유골의 “봉안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마다 재사용 계약을 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추모관의 사용) ① 추모관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추모관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봉안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봉안하는 유골은 “화장된 것이어야 한다”를 “봉안하는 유골은 화장된 것이어야 하며 유골함을 봉인하여 안치하여야 한다. (목함, 한지함 제외)”로 한다.

제27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사용료”로 한다.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관 사용자와 추모관 사용기간 “연장신청자는” 『별표3』에 의한 “추모관 사용료 및 관리수수료를 추모관 사용신고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를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관 사용자와 추모관 사용기간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3』에 의한 “추모관 사용료를 추모관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은 삭제 한다.

제6장 사설봉안시설 <장제목 삭제>

제31조(구분)는 삭제한다.

제32조(설치)는 삭제한다.

제33조(안치유골)는 삭제한다.

제37조(위탁취소)는 삭제한다.

제38조(직원) “공설장묘시설(공원묘지, 승화원, 추모관)”을 “공설장사시설(공설묘지, 화장시설, 추모관)”로 하고 “공무원”을 “장묘시설계”로 한다.

제40조(사용료 및 관리료 감면) “사용료 및 관리료 감면”을 “사용료 감면”으로 한다.

① “공설장사시설”이라 함은 “공원묘지, 승화원”, 추모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를 “공설장사시설”이라 함은 “공설묘지, 화장시설”, 추모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② “공원”묘지를 “공설”묘지라 하고 “사용료 및 관리료”를 “사용료”라 한다.

③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료”를 “사용료”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시설묘지"라 함은 개인, 가족, 종중·문중,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p> <p>2. "공설묘지"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묘지를 말한다.</p> <p>3. "화장시설"이라 함은 사체, 유골, 태반(사산오물), 적출물등을 화장하는 시설을 말한다.</p> <p>4. "봉안시설"이라 함은 사체 및 유골을 화장하여 도자기와 같은 형태의 그릇에 담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봉안당" "봉안탑" "봉안묘"로 구별한다.</p> <p>5. "봉안당"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써의 봉안시설을 말하며, "봉안탑"은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을 말하고, "봉안묘"라함은 분묘 그 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서 봉안당 및 봉안탑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p> <p>6."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p>	<p>2조(정의) <삭제></p>
<p>제8조(허가취소) 묘지 사용허가를 얻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p> <p>1. 묘지 사용일로부터 1년이상 제6조의 규정에 대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때</p> <p>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배하여 독촉하여도 이에 불응할 때</p> <p>3.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p>	<p>제8조(허가취소) <삭제></p>
<p>제9조(명칭 및 위치) ①군산시공설묘지의 명칭은 군산시공원묘지(이하 "공원묘지"라 한다)라 칭한다.</p> <p>②공원묘지의 위치는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산 16, 22, 23, 24,전452-3번지와, 군산시 오식도동 503-2번지 둔다.</p>	<p>제9조(명칭 및 위치) ①군산시공설 묘지(이하 "공설묘지")라 칭한다.</p> <p>②공설묘지의 위치는 ----- ----- -----.</p>
<p>제10조(사용) ①공원묘지를 사용(사체를 매장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15년으로하며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p>	<p>제10조(사용) ①공설묘지를 사용(시신을 -----) ----- -----.</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공설묘지 사용 계약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마다 재계약하고 6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자격) <u>공원묘지</u>의 사용 자격은 사망자의 주소 또는 본적이 <u>군산시인 자에 한하여</u>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시 구역 이외의 거주자나 또는 외국인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p>	<p>제11조(자격) <u>공설묘지</u>의 사용자격은 <u>군산시민 인자에 한하여</u></p>
<p>제13조(분묘의구조) ① <생략> ② 분묘에는 반드시 <u>사망자의 성명 등을 표기한 묘비</u>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p>	<p>제13조(공설묘지 분묘의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분묘에는 반드시 <u>사망자의 성명 등을 표기한 묘비</u>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u>묘지둘레석은 세로2미터 가로1미터 이내이며 비석은 1미터 이하로써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u></p>
<p>제15조(묘지사용권의 승계) ① 공원묘지 사용권은 호주 상속자가 이를 승계한다. ② <u>호주상속자가 없을 경우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연고자 순위에 의한다.</u></p>	<p>제15조(공설묘지사용권의 승계) ① <삭제> ② <u>공설묘지 사용권의 승계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의 권리, 의무 순위에 따른다.</u></p>
<p>제16조(사용료 및 관리료) 공원묘지 사용자는 별표1의 <u>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u>를 매장신고할 때 또는 <u>묘지사용 연장</u>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6조(사용료) <u>공설묘지</u> 사용자는 별표1의 <u>공설묘지 사용료</u> 를 매장신고할 때 또는 <u>묘지제사용 계약</u>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한다.</p>
<p>제17조(사용신고 취소) <u>사용신고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u> 시장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신고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때 2. 임의로 분묘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타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3. 사용신고를 받은 자가 1월 이내에 분묘를 미설치하였을 때 4. 법령, 조례, 규칙 기타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p>	<p>제17조(사용신고 취소) <삭제></p>
<p>제19조(사용신고) ① <u>승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1호 서식 시체 매·화장신고서</u>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u>군산시에 거주하고있는 시민과 본적이 군산시인 자 또는 인접지역 거주자</u>라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p>	<p>제19조(사용신고) ① <u>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1호 서식 시신, 개장 유골 화장신고서</u>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p>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사용료) 승화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신고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산시 거주 외국인과 서천 군민이 공설화장시설 이용시 군산시민과 동일하게 사용료를 적용한다</p>	<p>제20조(사용료) 화장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 ----- -----</p>
<p>제21조(사용료 감면) <u><신 설></u></p>	<p>제21조(사용료 감면) ① 현역군인 및 의무경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하여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p>
<p>제25조(봉안기간)①유골의 봉안기간은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17조 규정에 준하여 15년으로 하되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 유골에 대하여는 장사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10년으로 하되, 10년이 지난 무연고 유골은 모아서 화장후 일정한 장소에 매장한다. ②<생략> ③<생략></p>	<p>제25조(봉안사용기간)①유골의 봉안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며 15년마다 재사용 계약을 하여 연장 할 수 있다. ----- ----- ----- ----- -----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p>
<p>제26조(추모관의 사용) ①추모관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봉안하는 유골은 화장된 것이어야 한다. ③ <생 략></p>	<p>제26조(추모관의 사용) ①추모관에 유골을 봉안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봉안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봉안하는 유골은 화장된 것이어야 하며 유골함을 봉인하여 안치하여야 한다.(목함,한지함 제외) ③현행과 같음</p>
<p>제27조(사용료 및 관리수수료) 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관 사용자와 추모관 사용기간 연장신청자는 [별표 3]에 의한 추모관 사용료 및 관리 수수료를 추모관 사용신고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봉안함은 시장이 별도의 가격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p>	<p>제27조(사용료)①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모관 사용자와 추모관 사용기간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자는 [별표 3]에 의한 추모관 사용료를 추모관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p>
<p>제6장 사설봉안시설 전문</p> <p>제31조(구분) "사설봉안시설"이라 함은 개인, 가족, 문중,종중, 법인등에서 사체 및 유골을 화장하여 안치할 목적으로 설치한 봉안당, 봉안묘, 봉안탑등과 같은 시설물을 말한다.</p> <p>제32조(설치) 봉안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상당한 내부공간을 확보하여 6구 이상의 유골을 수장하여야 함. 2. 내부 구조물은 견고하게 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함. 3. 외부의 습기를 차단하고 지하수의 배수 구조를 설치함. 4. 필요시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5. 외형은 친근감 있는 조형물등으로 검소하게 치장함.</p>	<p>제6장 (장 제목) <삭 제></p> <p>제31조(구분) <삭 제></p> <p>제32조(설치) <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33조(안치유골) <u>봉안시설에 안치하기 위한 사체 및 유골은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화장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연분묘 정리시 발생하는 유골 2. 1종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 3. 행려사망자중 연고자가 없는 자 	<p>제33조(안치유골) <삭 제></p>
<p>제37조(위탁취소) <u>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탁자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p>제37조(위탁취소) <삭 제></p>
<p>제38조(직원)공설장묘시설(공원묘지,승화원,추모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p>	<p>제38조(직원)공설장사시설(공설묘지,화장시설,추모관)의 관리를 위해 장묘시설계를 두되</p> <p>-----</p>
<p>제40조(사용료 및 관리료 감면) ①“공설장사시설”이라 함은 공원묘지, 승화원, 추모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②시장은 관내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대해 “공원”묘지, 추모관 “사용료 및 관리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p>	<p>제40조(사용료 감면) ①“공설장사시설”이라 함은 “공설묘지, 화장시설”, 추모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②----- ----- ----- “공설”묘지, 추모관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p>
<p>③ 시장이 재해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료 50%, 단 임피면 공설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에 대하여는 사용료 및 관리료 80%, 그밖의 임피면민에 대하여는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p>	<p>③ -----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50%, 단 임피면 공설장사시설 인근마을 주민에 대하여는 사용료 80%, -----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50%를 감면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별표1]<개정2005.12.30> 공원묘지사용요금(제16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 분</th> <th>계</th> <th>사용료</th> <th>관리료</th> </tr> <tr> <td>1묘당(단위:원)</td> <td>500,000</td> <td>445,000</td> <td>55,000</td> </tr> </table>	구 분	계	사용료	관리료	1묘당(단위:원)	500,000	445,000	55,000	<p>[별표1] 공설묘지사용요금(제16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구 분</th> <th>계</th> <th>사용료</th> </tr> <tr> <td>1묘당(단위:원)</td> <td>500,000</td> <td>500,000</td> </tr> </table>	구 분	계	사용료	1묘당(단위:원)	500,000	500,000																																														
구 분	계	사용료	관리료																																																										
1묘당(단위:원)	500,000	445,000	55,000																																																										
구 분	계	사용료																																																											
1묘당(단위:원)	500,000	500,000																																																											
<p>[별표2]<개정2005.12.30, 2008.05.20, 2014.04.28> 승화원 사용요금 (제20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기준</th>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3">금 액 (원)</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관내 (군산시)</th> <th>관 외 (도내)</th> <th>(도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1건당</td> <td>15세이상</td> <td>60,000</td> <td>300,000</td> <td>500,000</td> <td></td> </tr> <tr> <td>15세미만</td> <td>45,000</td> <td>150,000</td> <td>300,000</td> <td></td> </tr> <tr> <td>개장유골</td> <td>30,000</td> <td>150,000</td> <td>300,000</td> <td></td> </tr> <tr> <td>사산오물</td> <td>15,000</td> <td>70,000</td> <td>150,000</td> <td></td> </tr> <tr> <td>1kg당</td> <td>적출물</td> <td>1,500</td> <td>5,000</td> <td>10,000</td> <td></td> </tr> </tbody> </table>	기준	구분	금 액 (원)			비 고	관내 (군산시)	관 외 (도내)	(도외)	1건당	15세이상	60,000	300,000	500,000		15세미만	45,000	150,000	300,000		개장유골	30,000	150,000	300,000		사산오물	15,000	70,000	150,000		1kg당	적출물	1,500	5,000	10,000		<p>[별표2] 화장시설 사용요금 (제20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기준</th>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금 액 (원)</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관 내</th> <th>관 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1건 당</td> <td>15세이상</td> <td>60,000</td> <td>500,000</td> <td></td> </tr> <tr> <td>15세미만</td> <td>45,000</td> <td>300,000</td> <td></td> </tr> <tr> <td>개장유골</td> <td>30,000</td> <td>300,000</td> <td></td> </tr> <tr> <td>사산아</td> <td>15,000</td> <td>150,000</td> <td></td> </tr> </tbody> </table>	기준	구분	금 액 (원)		비 고	관 내	관 외	1건 당	15세이상	60,000	500,000		15세미만	45,000	300,000		개장유골	30,000	300,000		사산아	15,000	150,000	
기준			구분	금 액 (원)			비 고																																																						
	관내 (군산시)	관 외 (도내)		(도외)																																																									
1건당	15세이상	60,000	300,000	500,000																																																									
	15세미만	45,000	150,000	300,000																																																									
	개장유골	30,000	150,000	300,000																																																									
	사산오물	15,000	70,000	150,000																																																									
1kg당	적출물	1,500	5,000	10,000																																																									
기준	구분	금 액 (원)		비 고																																																									
		관 내	관 외																																																										
1건 당	15세이상	60,000	500,000																																																										
	15세미만	45,000	300,000																																																										
	개장유골	30,000	300,000																																																										
	사산아	15,000	150,000																																																										
<p>[별표3] 추모관 사용요금(제27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기 준</th> <th>계</th> <th>사용료</th> <th>관리수수료</th> <th>비 고</th> </tr> <tr> <td>1건당(단위:원)</td> <td>100,000</td> <td>73,000</td> <td>27,000</td> <td></td> </tr> </table>	기 준	계	사용료	관리수수료	비 고	1건당(단위:원)	100,000	73,000	27,000		<p>[별표3] 추모관 사용요금(제27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기 준</th> <th>계</th> <th>사용료</th> <th>비 고</th> </tr> <tr> <td>1건당(단위:원)</td> <td>250,000</td> <td>250,000</td> <td></td> </tr> </table>	기 준	계	사용료	비 고	1건당(단위:원)	250,000	250,000																																											
기 준	계	사용료	관리수수료	비 고																																																									
1건당(단위:원)	100,000	73,000	27,000																																																										
기 준	계	사용료	비 고																																																										
1건당(단위:원)	250,000	250,000																																																											

군산시 공고 제2016-1878 호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이 신설 개정(2014. 5. 28)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법 명칭 변경 및 법 신설(안 제1조1)

나. 특별회계 존속기한 및 연장 명시(안 제1조2)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3조제1항의 6,7,8,9 제3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제94조
-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및 제70조
- 3) 「지방재정법」 제9조
- 4) 「도로법」 제66조
- 5) 「도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6) 「자동차관리법」 제74조 및 제84조
- 7)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 9)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 가족청소년과

라. 규제심사 : 기획예산과 협의

마. 기 타

- 1) 입법예고(2016. 11. 1. ~ 11. 21.)

4.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11월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유	비고
	찬성	반대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군산시청 교통행정과(교통기획계)
- 전화 : 063)454-3772, FAX : 063)454-3796
- 전자우편 : rezonaga@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직접방문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교통기획계(전화 063-454-3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안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1(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군산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수 있다.**

제3조의제1항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세입) ①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법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1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 제66조)
- 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 8.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도로교통법 제160조의3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관련)
- 9. 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관련)

제3조의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제1항제12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조표**

신·구조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①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및 <u>자동차운수사업법</u> 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1(목적) ----- -----, ----- 및 <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u> 등에----- ----- -----.
<신 설>	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군산시교통

<p>제3조(세입) ① 1~5(생략)</p> <p>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 제43조)</p> <p>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p> <p>8.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75조,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관련)</p> <p>9. 과징금(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61조 관련)</p> <p>10. 11, 12, 13, 14 (생략)</p> <p>제3조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p>	<p>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p> <p>제3조(세입)①1~5(현행과 같음)</p> <p>6. ----- (----- 제66조)</p> <p>7. ----- (----- 제36조)</p> <p>8. 과태료(----- 제84조, ----- 제60조의3, ----- 제48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0조 관련)</p> <p>9. 과징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 제74조 관련)</p> <p>10.11.12,13,14 (현행과 같음)</p> <p>제3조 ② -----제12호의 ----- 지방세법 제112조(같은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p>
---	---

붙임 3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6.2.12.] [법률 제13485호, 2015.8.11., 일부개정]

- 제88조(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49조의6제1항 또는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5.27.>
1. 벽지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하여서 생긴 손실의 보전(補填)
 2.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 시설의 정비·확충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나 용자
7.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⑤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대상, 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1.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
4. 제66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67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2.1., 2014.1.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의 운임을 받은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85조제1항제17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1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9.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65조제1항(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16.6.30.] [법률 제13694호, 2015.12.29., 일부개정]

제2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용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1. 화물 터미널의 건설과 확충
2.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확충
3. 경영개선이나 그 밖에 화물에 대한 정보 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7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6.15.>

1. 제51조의8(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51조의9(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6.15.,

2011.9.16., 2013.5.22., 2014.3.18., 2015.6.22., 2015.12.29.>

1.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조(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의2.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 업무에 종사한 자
 - 3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
 4. 제10조를 위반한 자
 - 4의2.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5.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
 6.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
 7.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7의2. 삭제 <2015.6.22.>
 - 7의3. 삭제 <2015.6.22.>
 8.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18조제1항(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0조제1항(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1.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 12의2.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국제물류주선사업자
 13.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6. 제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17. 제37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
 18.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 18의2.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 18의3.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운송사업자
 19.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용자금을 보조받거나 용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21의2. 제47조의6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자
 22.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3.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5. 제6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26.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지방재정법

[시행 2016.9.30.] [법률 제14111호, 2016.3.29., 타법개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5.28.> [전문개정 2011.8.4.]

도로법

[시행 2016.9.1.] [법률 제13796호, 2016.1.19., 타법개정]

-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 2016.1.25.] [법률 제13433호, 2015.7.24., 일부개정]

-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3.5.22., 2014.5.21.>
- ③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한다. <신설 2013.8.6.>
- ④ 부담금 부과기간 중에 부과대상 시설물의 철거·멸실(滅失) 등으로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부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부과기간 중 최종 소유자를 부과대상자로 한다. <신설 2013.8.6.>
- ⑤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그 부과대상 시설물 중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기준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8.6.>
-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4.5.21.>
- ⑦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신설 2013.5.22., 2013.8.6., 2014.5.21.>
-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4.5.21.>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⑨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2013.8.6., 2014.5.21.>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에서 이동 <2008.3.28.>]

자동차관리법

[시행 2016.8.12.] [법률 제13486호, 2015.8.11., 일부개정]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 제5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 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자동차, 자동차부품 또는 내압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5.12.29.>

1.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
2.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부품을 판매한 자
3. 제30조제1항 또는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제31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3.8.6.>

[전문개정 2009.2.6.]

제84조(과태료) ①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5.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2015.8.11.>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의 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5.8.11.>
9.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13의2.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 13의3.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3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제2항 및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조사·보고·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 15의2.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1.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1의2.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22. 제5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23.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4.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5.8.11.>
 1.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2조제1호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 제13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 제48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신고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12.18.>
 5.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8조제3항 또는 제58조제8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도로교통법

[시행 2016.7.28.] [법률 제13829호, 2016.1.27., 일부개정]

제160조(과태료)

-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5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

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 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8.11.>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전문개정 2011.6.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 2016.9.23.] [법률 제14092호, 2016.3.22., 일부개정]

제48조(과태료) ① 삭제 <2013.8.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가 청구한 가불금의 지급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청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부한 보험회사등
4. 제25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보험회사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5.27.>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관리한 의료기관의 개설자

3의2.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록의 열람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3의3.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보고요구·질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4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제39조의6을 위반하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5.6.2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부과·징수한다. <신설 2009.2.6., 2015.6.22.>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16.7.20.] [대통령령 제27359호, 2016.7.19., 일부개정]

제15조(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①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21.]

군산시 공고 제2016-1881호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2016년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 방침 및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발굴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조항을 삭제 하고, 조례 운용상에 나타난 문제점 보완
-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생활밀착형 요금 연체료 부과방식 개선 권고 (연체일수와 무관한 연체료 산정으로 불합리한 부담 초래)

2. 주요내용

- 가. 2016년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 및 법제처 조례정비 발굴 지침
 - 일시사용 신고 의무 삭제 (안 제6조)
 -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조항 삭제 (안 제8조)
 -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미납시 점용허가 취소조항 삭제 (안 제18조제4항)
 - 법령체계에 맞게 용어 수정 (안 제24조제2항)
 - 조례 운용상 보완이 필요한 조항 신설 (안 제9조제1항제2호)
 -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 정비
 - 연체금 징수요율 변경 (고정비율 ⇨ 일할) (안 제25조)
 - ▶ 현행 :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
 - ▶ 개정 :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 ※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 고
	찬성	반대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하수과(전화 454-5455, 팩스 454-5449)
- 전자우편 : sonicboom@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직접방문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하수과 하수행정계(전화 454-5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제5조(사용중지 등의 신고)로 하고,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제6조를 삭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times 3/100 \times 12개월 \times 연체일수/365)$$

②제1항의 연체금을 일할계산 적용할 경우에는 하수도사용자등이 지정한 납부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수납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을 따른다”로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5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생 략)</u> 1. 배수설비의 사용을 <u>개시·중지·폐지</u>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 4. (생 략) ② (생 략)</p>	<p><u>제5조(사용중지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u> 1. ----- <u>중지·폐지</u> ----- -----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u>제6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u></p>	<p><u>제6조(일시사용 신고)</u> <삭 제></p>
<p><u>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u>별</p>	<p><u>제8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u></p>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시장의공사시행) ① (생략)

- 1. (생략)
- 2. (생략)
 - ② (생략)
 - ③ (생략)
 - ④ (생략)
 - ⑤ (생략)
- 3. <신설>

제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 ①(생략)
- ②(생략)
- ③(생략)
- ④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부터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01>

제25조(가산금 및 독촉) ①-----

-----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입 때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삭제>

제9조(시장의공사시행) ①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 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④ (현행과 같음)
 - ⑤ (현행과 같음)
- 3.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 ①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
- ④ <삭제>

제24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세기본법』 -----
----- 따른다.

제25조(연체금 및 독촉)①-----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 × 3/100 × 12개월 × 연체일수/365)

②제1항의 연체금을 일할계산 적용할 경우에는 하수도사용자등이 지정한 납부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아 수납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6-1882호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2016년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 방침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시행규칙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함
- 나. 2016년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 조항 정비
 - 1) 안 제11조(점용 허가 신청) <삭제>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 고
	찬성	반대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하수과(전화 454-5455, 팩스 454-5449)
 - 전자우편 : sonicboom@korea.kr
 -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직접방문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하수과 하수행정계(전화 454-5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조례시행규칙”을 “군산시 하수도
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및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u></p> <p><u>제11조(점용 허가 신청)</u> ①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일반 평면도 (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서 (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개정 2001.07.31>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가 나 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 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 등의 사본</p> <p>②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일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 7.31></p>	<p><u>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u></p> <p><u>제11조(점용 허가 신청)</u> <삭 제></p>

군산시 공고 제2016-1888호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2016년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발굴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조항을 삭제 하고, 조례 운용상에 나타난 문제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지방공기업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항삭제

- 하수도업무 관리자 임명조항 삭제 (안 제4조제2항)
- 기업관리 규정 조항 삭제 (안 제7조)

나. 기타사항 (시장의 인사권 제한 조항)

- 관리자의 인사권 부여 조항 삭제 (안 제5조제2항)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유	비고
	찬성	반대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하수과 (전화 454-5455, 팩스 454-5449)
- 전자우편 : sonicboom@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직접방문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하수과 하수행정계 (전화 454-5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

군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4조(관리자의 지정)</u> ① (생 략)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p>	<p><u>제4조(관리자의 지정)</u>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p>
<p><u>제5조(조직 및 인사)</u>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p>	<p><u>제5조(조직 및 인사)</u>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p>
<p><u>제7조(기업관리 규정)</u>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u>제7조(기업관리 규정)</u> <삭 제></p>

군산시 공고 제2016-1890호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2016년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 방침 및 범제처 조례 정비과제 발굴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조항을 삭제 하고, 조례 운용상에 나타난 문제점 보완

2. 주요내용

- 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안 제5조제1항)
 - 제4호 : "교육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어 변경
 - 제7호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변경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 고
	찬성	반대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하수과 (전화 454-5455, 팩스 454-5449)
- 전자우편 : sonicboom@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직접방문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하수과 하수행정계 (전화 454-5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교육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제7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을 “자원순환 관련 시설”로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 (생 략) 1. ~ 3. (생 략) 4. ----- 교육 시설 5.~ 6. (생 략) 7. -----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8.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p>	<p>제5조(중수도의 설치·관리) ①(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 교육 연구시설 5.~ 6. (현행과 같음) 7. ----- 자원 순환 관련 시설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군산시 공고 제2016-1891호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 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2016년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 방침 및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발굴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조항을 삭제 하고, 조례 운용상에 나타난 문제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정비함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안 제3조)

- 제5호 :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용어 변경

다. 도로법 적용 규정 변경 (안 제3조)

- 제6호 : "도로법 제3조"를 "도로법 제2조 제2호"로 변경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적용 규정 변경 (안 제3조)

- 제7호 :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을 "철도산업 발전기본법 제3조의 철도시설"로 변경

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안 제3조)

- 제10호 : "석유사업법 제9조"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로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 고
	찬성	반대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하수과 (전화 454-5455, 팩스 454-5449)

- 전자우편 : sonicboom@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직접방문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하수과 하수행정계 (전화 454-5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을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로 한다.

제3조 제5호의 “도시공원법” 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로, 제6호의 “도로법 제3조” 를 “도로법 제2조 제2호” 로, 제7호의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의 철도시설” 로, 제10호의 “석유사업법 제9조” 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로 수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군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군산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적용의 범위) (생략)	제3조(적용의 범위)(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도시공원법-----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6. 도로법 제3조-----	6. 도로법 제2조 제2호-----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의 철도 시설
8. ~ 9. (생략)	8. ~ 9. (현행과 같음)
10. 석유사업법 제9조-----	1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	-----
11. ~ 16. (생략)	11. ~ 16. (현행과 같음)

군산시 공고 제2016-1892호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되고, 전면개정 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우리부서 현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명칭 변경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변경

나. 위원회 위원의 범위 확대 반영(안 제2조 제3항의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3항의2에 따라 위원의 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포함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보장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제4항)

본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

라. 위원회의 기능 반영(안 제3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항 반영

마. 조직개편에 따른 내용 변경(안 제8조 제2항)

본 위원회 담당 서기를 “토지관리담당주사”에서 “지가관리계장”으로 변경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토지정보과(Tel. 063-454-3993, FAX. 063-452-6929,

전자우편 : imbin2000@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계(전화 063-454-399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조례 제 호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칭을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한다.

제1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로 하며,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제2조 제3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법률 제25조 제1항에 의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표준지 가격의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제2항 중 “토지관리담당주사가”를 “지가관리계장이”로 한다.

군산시 조례 제642호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부칙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결과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와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조례명 변경> 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u>군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u>-----</p> <p>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③위원회의 위원은----- 1. ----- 2. ----- 3. ----- 4. ----- 5. -----</p> <p>제3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법률 제20조제1항에 의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u>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u> 1.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표준지 가격의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2. <u>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u> 3. <u>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u> 4. <u>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u> 5. <u>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한 개별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u> 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8조(간사와 서기) ②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되고 서기는 <u>토지관리담당주사가 된다.</u></p>	<p>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u>-----</p> <p>제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③위원회의 위원은----- 1. ----- 2. ----- 3. ----- 4. ----- 5. ----- 6.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u> ④ <u>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u></p> <p>제3조(기능)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법률 제25조제1항에 의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u>심의한다.</u> 1.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표준지 가격의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 2. <u>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u> 3. <u>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u> 4. <u>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u> 5. <u>법률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u> 6. <u>법률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 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u> 7. <u>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u> 8.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p> <p>제8조(간사와 서기) ② 간사는 토지정보과장이 되고 서기는 <u>지가관리계장이 된다.</u></p>

부 칙(2005.04.30 조례 제 642호)

②(법률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결과 그 밖의 행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

부 칙(2005.04.30 조례 제 642호)

②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결과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토지평가위원회와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

군산시 공고 제2016-1894호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2016년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 방침 및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발굴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조항을 삭제 하고, 조례 운용상에 나타난 문제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관련법 인용 조문 수정 (안 제1조)
나. 위탁계약의 해지 조항 삭제 (안 제9조)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 고
	찬성	반대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하수과 (전화 454-5455, 팩스 454-5449)
- 전자우편 : sonicboom@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직접방문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하수과 하수행정계 (전화 454-54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4조에 따른”을 “제19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 제74조에 따른 ----- ----- -----</p>	<p>제1조(목적)----- ----- 제19의2에 따른 ----- ----- -----</p>			
<p>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하수처리장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관리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p>	<p>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삭 제> _</p>			

군산시 공고 제2016-1895호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2016년 전국규제지도 규제지수 개선 방침 및 법제처 조례 정비과제 발굴 지침에 따라 불필요한 관련조항을 삭제 하고, 조례 운용상에 나타난 문제점 보완
- 나. 경제침체에 따른 군산2국가산업단지 입주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증가산금 부과 항목 삭제

2. 주요내용

- 가.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조항 삭제 (안 제10조)
- 나. 증가산금 조항 삭제 (안 제27조제2항)

3. 의견제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유	비고
	찬성	반대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하수과 (전화 454-5455, 팩스 454-5449)
- 전자우편 : sonicboom@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직접방문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하수과 하수처리계 (전화 454-5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 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건설업법」은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27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생략)</p> <p>②----- -----「건설업법」 ----- -----</p> <p>③(생략)</p>	<p>제9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 (생략)</p> <p>②----- -----「건설산업기본법」 ----- -----</p> <p>③(생략)</p>
<p>제10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10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삭 제></p>
<p>제27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생략)</p> <p>②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제21조 규정에 의한 부과금을 매1월 경과시마다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 하며 징수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p>	<p>제27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 (현행과 같음)</p> <p>② <삭 제></p>

군산시 공고 제2016-1897호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전부를 폐지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편입 (2016. ~)

2. 주요내용

가. 군산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3. 의견제출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하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 고
	찬성	반대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하수과 (전화 454-5492, 팩스 454-5449)

- 전자우편 : sonicboom@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직접방문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하수과 하수처리계 (전화 454-5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군산시 폐수처리시설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6-1912호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제(권리, 의무) 삭제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 고
	찬성	반대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전화 454-2972, 팩스 454-2994)

- 전자우편 : zxcv7410@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직접방문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산림녹지과 도심녹화계(전화 454-2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안)

(제정) 2015.12.15 조례 제130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시림등 조성·관리) 도시림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및 조성·관리는 법에 따른다.

제4조(가로수 조성·관리기준) 법에서 정하는 가로수 조성·관리기준은 법에 따른다.

제5조(식재 기준 등)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산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종류 또는 보도의 폭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 주변의 장애물 등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1. 보도에 나무를 식재할 경우에는 제설제 등 화학약품으로부터의 약해와 이동차량 등으로부터 물리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도로에 접한 보차도 경계선으로부터 가로수간 수간의 중심까지 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의 폭 등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2. 보도가 없는 도로에 키큰나무(교목)를 식재하는 경우에는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2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한다. 다만 현지어건 상 갓길 끝으로부터 2미터 이상 떨어진 위치에 식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지치기 등을 통해 수고, 지하고, 수관폭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의 구조 보전과 교통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갓길 끝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2미터 미만인 지역에 식재할 수 있다.
3. 절토 비탈면은 식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녹화, 차폐 등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토 비탈면에도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5.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6. 중앙분리대에 수목을 식재할 경우 지하고는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키큰나무(교목)는 천근성 및 비대 성장의 특성이 강한 수종은 피하고 심근성 및 직립성장 특성을 가진 수종으로 하며, 키작은나무(관목)은 화목류나 수벽에 적합한 수종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초화류는 화종, 화기, 활착율을 고려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③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하여야 한다.

1. 키큰나무(교목)
 - 가. 식재간격은 8미터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여건, 식재 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 나. 식재 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한 열식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녹음제공·경관개선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식 또는 혼식할 수 있다.
 - 다. 보도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할 수 있다.
 -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2. 키작은나무(관목)
 - 가. 식재간격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교통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한다.
 - 나. 식재유형은 동일 수종으로 군식하고, 하나의 식재군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는 다른 수종으로 혼식할 수 있다.
 - 다.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키큰나무, 키작은나무,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할 수 있다.

제6조(식재시기) 식재의 시기는 가로수가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과 가을철에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

제7조(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판, 안전시설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옮겨심기, 제거 등 가로수 관리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어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 공간이 반영되어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전기시설의 설치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등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시 가로수 보호틀·방근시설 등의 확대 필요성 검토
 5. 그 밖에 관련 법령·조례 및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제8조(가지치기) ①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형에 변화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가로수의 건강한 생육, 아름다운 수형, 도로표지 및 신호등 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시계 확보, 통행공간의 확보, 전승·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지치기를 실시한다.

- 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리청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병해충의 방제) 관리청은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방제 실시 전 주민에게 고지하는 등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바꿔심기·메워심기 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 등은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보행자·운전자 또는 동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6.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시에는 관리청 관계 공무원의 감독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부담 등) ①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도로법 규정에 의거 원인자에게 별표3 기준에 따라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인이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경우에는 비용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 이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도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원인자가 제3항에 의한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시장은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등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은 별표3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산출한다.
- ⑦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시장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 ⑧ 제7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3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 ② 삭제
- ③ 삭제
- ④ 삭제

제12조(가로수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가로수 관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의 발생신고
 3. 가로수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의 관리청에 신고
 5. 비상재해시의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또는 보호대 안에 쓰레기 등의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를 하는 행위
 4. 가로수 및 녹지대 내 불법 경작을 하는 행위
 5.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13조(가로수 관리대장의 작성 등) 관리청은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에 의한 가로수 노선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6-1913호

「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타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조문에 명시하여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수당과 여비, 기타 연구에 필요한 경비 지급

3.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 고
	찬성	반대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전화 454-2972, 팩스 454-2994)

- 전자우편 : zxcv7410@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직접방문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산림녹지과 도심녹화계(전화 454-297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

(제정) 2000.06.15 조례 제 44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녹지행정의 체계적인 도시녹화 발전방향을 설정하여 푸르고 아름다운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군산시 도시녹화발전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도시녹화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공원 및 녹화정책의 연구·검토
2.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연구
3. 장·단기 도시공원 녹화 발전계획 수립
4. 기타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의뢰한 사항에 대한 연구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군산시의회 의원 2인, 대학교수, 관계 전문가 및 군산시 소속공무원으로 도시녹화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④제3항중 군산시 소속 공무원의 수는 5인 이내로 한다.

제4조(위원장등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군산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의원의 경우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녹지를 담당하는(산림녹지과)부서의 계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장을 보조한다.

제8조(수당과 연구비) 군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①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와 심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에 대하여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공개)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군산시 공고 제2016-1914호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 법규안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1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상위법 기금 존속기한 신설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 명시

3. 의견제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6년 11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 (참조 :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이 유	비 고
	찬성	반대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산림녹지과 (전화 454-2972, 팩스 454-2994)

- 전자우편 : zxcv7410@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전화·팩스·전자우편·직접방문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산림녹지과 도심녹화계(전화 454-29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녹지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일부개정) 2005.08.01 조례 제 66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내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의 조성·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개발이익 환수금중 시 수익금의 일부
3. <삭제 97.12.01>
4.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이상을 출연한다.

③제1항제2호의 수익금 부담율은 10퍼센트로 하며 수익이 발생된 연도에 출연한다.

제3조(군산시녹지기금조성위원회) 기금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산녹지기금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관련 국·과장 및 전문분야의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심녹화담당계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위촉) 위원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기금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및 운영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는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영) 기금의 운영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1. 도심권내의 주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녹지조성
2. 도시권 주요거리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 및 녹지조성
3. 녹지조성 사업으로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의 지원
4. 기타 녹지조성에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9조(기금의 출납) ①기금의 출납은 군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금관리 및 집행에 관한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제10조(회계관계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의회보고) 부시장은 기금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의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군산시 고시 제2016-13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군산시 고시 2014-74호(2014.07.04.)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군 산 시 장
2016년 10월 28일

1. 사업시행지(변경없음) : 군산시 옥구읍 수산리 63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연구시설)사업
 - 나. 명 칭 : 상용차부품 복합주행성능 실증시험장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 가. 사업규모 : 연구시설(시험로, 지원동-4동), 녹지, 저류지, 주차장, 도로
 - 나. 부지면적 : 435,017m²
 - 다. 건축면적/연면적 : 2,552.68m²(0.58%) / 3,314.76m²(0.76%)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 : 기관명칭 변경
 - 가. 주소(변경없음) - 전라북도 군산시 동장산2길 6
 - 나. 성명(변경) - 당초: (재)전북자동차기술원 → 변경: (재)자동차융합기술원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2014. 07. 04. ~ 2018. 03.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게재 생략
8. 관계도서(변경없음) : 게재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6 - 132호

공유수면 점용·사용(변경)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하였기에 같은 법 제8조 제6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0. 25.

군 산 시 장

■ 고시사항

- ① 허가연월일 : 군산시 허가 2015-0007호 (2016. 10. 24.)
- ② 허가를 받은자
 - 주소 : 충청남도 보령시 탑동2길 25(남곡동)
 - 성명 : 주식회사 씨러브
- ③ 허가목적 : 침몰선 해저탐사 및 매장물 발굴
- ④ 허가장소 :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남방 5km 지점 공유수면
- ⑤ 면 적 : 500m²
- ⑥ 허가기간 : 2016. 11. 1. ~ 2017. 10. 31.까지

군산시 고시 제2016-133호

군산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군산시 고시 제2014-8호(2014.01.10.)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도시 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신시도배수지)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산17-10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신시도배수지)사업
 - 나. 명 칭 : 신시도 배수지 신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없음)

구 분	시 설 명	결정면적(m ²)	실시계획면적(m ²)	비 고
수도공급설비	신시도배수지	12,100	12,100	V=4,000m ³ /일

4.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가. 주 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 나. 성 명 : 군산시장(수도과)
5. 사업기간 및 변경사유(변경)
 - 가. 사업기간 : (당초) 2014. 01. 10. ~ 2014. 12. 31.
(변경) 2014. 01. 10. ~ 2018. 06. 30.
 - 나. 변경사유 :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지연에 따른 수도시설공사 장기화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위 치	지번	지목	지적 (m ²)	편입 면적 (m ²)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권리 내용	
옥도면 신시도리	산17-10	임	12,100	12,100	군산시	-				

군산시 고시 제2016-134호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군산 월명동·신창동·둔율동지구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하고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6년 10월 28일

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1. 용도지구

1.1 방화지구

1) 방화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구명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1	방화지구	시가지 중심부 및 조촌, 경암, 미장, 경장동 상업지역 일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제한	2,343,730	전북고136 ('87.10.31)	
변경	1	방화지구	시가지 중심부 및 조촌, 경암, 미장, 경장동 상업지역 일원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제한	2,343,506	전북고136 ('87.10.31)	

2) 방화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방화지구	면적 : 2,343,730㎡ -> 2,343,506㎡ 감)224㎡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변경

2. 교통시설

2.1 도로

1)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	25	주간선	3,400	나운동 대1-2	장미동 대2-8종점	일반도로	시청	건고525 (‘67.7.25)	
변경	대로	3	2	25	주간선	3,400	나운동 대1-2	장미동 대2-8종점	일반도로	시청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1	1	22~24	보조간선	1,251	해망동 대2-8	월명동 대3-2	일반도로	월명공원	건고525 (‘67.7.25)	
변경	중로	1	1	22~24	보조간선	1,251	해망동 대2-8	월명동 대3-2	일반도로	월명공원	건고525 (‘67.7.25)	
기정	중로	1	3	20	주간선	1,700	수송동 4호광장	명산동 대3-2	일반도로		건고228 (‘86.5.23)	
변경	중로	1	3	20	주간선	1,700	수송동 4호광장	명산동 대3-2	일반도로		건고228 (‘86.5.23)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	482	379-2도 대3-2	295-2도 중3-12	일반도로	해망터널	전북고15 (‘83.1.29)	
변경	중로	2	1	15	보조간선	482	379-2도 대3-2	295-2도 중3-12	일반도로	해망터널	전북고15 (‘83.1.29)	
기정	중로	2	2	15	보조간선	1,054	중앙동 대3-2	중앙동 대3-2	일반도로		건고37 (‘76.3.27)	
변경	중로	2	2	15	보조간선	1,054	중앙동 대3-2	중앙동 대3-2	일반도로		건고37 (‘76.3.27)	
기정	중로	3	50	12	국지도로	106	중1-1	소2-63	일반도로		군산고94 (‘09.11.26)	
변경	중로	3	50	12	국지도로	106	중1-1	소2-63	일반도로		군산고94 (‘09.11.26)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328	신창동30-13 대3-2	신창동7-4 소1-17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1	14	10	국지도로	328	신창동30-13 대3-2	신창동7-4 소1-17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1	15	10	집산도로	316	명산동1-4 대3-2	금동5-12 소3-1종점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1	15	10	집산도로	316	명산동1-4 대3-2	금동5-12 소3-1종점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1	16	10	국지도로	248	명산동13-4 대3-2	월명동8-19 소1-19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1	16	10	국지도로	248	명산동13-4 대3-2	월명동8-19 소1-19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7	10	국지도로	195	명산동 중2-1	신창동5-12 소1-15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1	17	10	국지도로	195	명산동 중2-1	신창동5-12 소1-15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도로	195	명산동 중2-1	신창동 4-7 소1-15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1	18	10	국지도로	195	명산동 중2-1	신창동 4-7 소1-15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1	19	10	집산도로	412	월명동 14-18 중1-1	중앙1가 6-1 중2-1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1	19	10	집산도로	412	월명동 14-18 중1-1	중앙1가 6-1 중2-1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1	20	10	국지도로	413	월명동 16-13 중1-1	중앙1가 6-11 중2-1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1	20	10	국지도로	413	월명동 16-13 중1-1	중앙1가 6-11 중2-1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1	21	10	국지도로	414	명산동 17-35 중1-1	중앙1가 8-5 중2-1	일반도로		전북고135 (‘78.5.22)	
변경	소로	1	21	10	국지도로	414	명산동 17-35 중1-1	중앙1가 8-5 중2-1	일반도로		전북고135 (‘78.5.22)	
기정	소로	1	22	10	국지도로	414	명산동 18-19 중1-1	중앙1가 10-5 중2-1	일반도로		전북고135 (‘78.5.22)	
변경	소로	1	22	10	국지도로	414	명산동 18-19 중1-1	중앙1가 10-5 중2-1	일반도로		전북고135 (‘78.5.22)	
기정	소로	1	23	10	국지도로	350	신창동 28-5 대3-2	개북동 10-10 소1-25	일반도로		전북고136 (87.10.22)	
변경	소로	1	23	10	국지도로	350	신창동 28-5 대3-2	개북동 10-10 소1-25	일반도로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1	24	10	집산도로	425	명산동 15-23 중1-3	중앙1가 14-5 중2-2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1	24	10	집산도로	425	명산동 15-23 중1-3	중앙1가 14-5 중2-2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1	296	10	국지도로	30	신창동 18-11 소1-24	신창동 20-10 소2-6	일반도로		군산고161 (‘94.4.)	
변경	소로	1	296	10	국지도로	30	신창동 18-11 소1-24	신창동 20-10 소2-6	일반도로		군산고161 (‘94.4.)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75	월명동 12-10 소1-19	월명동 13-1 소3-4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75	월명동 12-10 소1-19	월명동 13-1 소3-4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75	명산동 6-1 대3-2	명산동 소1-24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75	명산동 6-1 대3-2	명산동 소1-24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6	8	집산도로	323	신창동 (소1-296)	창성 108-1 (소2-7)	일반도로		전북고136 (‘87.10.22)	
변경	소로	2	6	8	집산도로	323	신창동 (소1-296)	창성 108-1 (소2-7)	일반도로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474	선양동 223-26 중1-3	개복동 3-4 소1-23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2	8	8	국지도로	474	선양동 223-26 중1-3	개복동 3-4 소1-23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107	중앙1가 20-1 중2-2	개복동 9-16 소1-23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2	9	8	국지도로	107	중앙1가 20-1 중2-2	개복동 9-16 소1-23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117	미원동 190 대3-4	둔율동 147-9 소2-742	일반도로		건고91 (‘68.7.22)	
변경	소로	2	12	8	국지도로	117	미원동 190 대3-4	둔율동 147-9 소2-742	일반도로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320	미원동 398 대3-4	중앙2가 56-10 소2-742	일반도로		건고91 (‘68.7.22)	
변경	소로	2	13	8	국지도로	320	미원동 398 대3-4	중앙2가 56-10 소2-742	일반도로		건고91 (‘68.7.22)	
기정	소로	2	63	8	국지도로	192	월명동 중3-50	월명동 월명공원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2	63	8	국지도로	192	월명동 중3-50	월명동 월명공원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2	735	8	국지도로	381	미원동 39 중1-3	중앙2가 112-1 중2-2	일반도로		전북고136 (‘87.10.22)	
변경	소로	2	735	8	국지도로	381	미원동 39 중1-3	중앙2가 112-1 중2-2	일반도로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742	8	국지도로	130	둔율동 147-23 중2-2	둔율동 176-2 소2-735	일반도로		전북고136 (‘87.10.22)	
변경	소로	2	742	8	국지도로	130	둔율동 147-23 중2-2	둔율동 176-2 소2-735	일반도로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2	755	8	국지도로	41	개복동 4-7 소2-6	개복동 6-3 소2-8	일반도로		군산고242 (2003.4.)	
변경	소로	2	755	8	국지도로	41	개복동 4-7 소2-6	개복동 6-3 소2-8	일반도로		군산고242 (2003.4.)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212	신흥동 중1-1	금동 84-2 소1-15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3	4	6	국지도로	212	신흥동 중1-1	금동 84-2 소1-15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384	미원동 24 소2-735	중앙가 136-34 소3-11	일반도로		전북고136 ('87.10.22)	
변경	소로	3	8	6	국지도로	384	미원동 24 소2-735	중앙가 136-34 소3-11	일반도로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3	69	6	국지도로	98	월명동 중1-1	월명동 26-10 소2-63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3	69	6	국지도로	98	월명동 중1-1	월명동 26-10 소2-63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3	70	6	국지도로	215	월명동 24-7 중3-50	월명동 29-10 소3-73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3	70	6	국지도로	215	월명동 24-7 중3-50	월명동 29-10 소3-73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3	72	6	집산도로	94	월명동 31-2 소2-63	월명동 30-7 소3-70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3	72	6	집산도로	94	월명동 31-2 소2-63	월명동 30-7 소3-70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3	73	6	국지도로	174	월명동 383 소2-63	월명동 1호 공원	일반도로		전북고392 ('80.12.4)	
변경	소로	3	73	6	국지도로	174	월명동 383 소2-63	월명동 1호 공원	일반도로		전북고392 ('80.12.4)	
기정	소로	3	74	6	국지도로	102	월명동 33-1 소3-73	월명동 33-32 1호 공원	일반도로		전북고45 ('83.3.10)	
변경	소로	3	74	6	국지도로	102	월명동 33-1 소3-73	월명동 33-32 1호 공원	일반도로		전북고45 ('83.3.10)	
기정	소로	3	448	6	국지도로	104	중앙가 16-7 중2-2	신창동 21-4 소1-23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3	448	6	국지도로	104	중앙가 16-7 중2-2	신창동 21-4 소1-23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360	미원동 103 중1-3	중앙가 54-5 중2-2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변경	소로	3	9	6	국지도로	360	미원동 103 중1-3	중앙가 54-5 중2-2	일반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소로	3	4-6	4	국지도로	75	신창동 20-6 소1-23	신창동 20-10 소2-6	일반도로		전북고136 ('87.10.22)	
변경	소로	3	4-6	4	국지도로	75	신창동 20-6 소1-23	신창동 20-10 소2-6	일반도로		전북고136 ('87.10.22)	
기정	소로	3	4-18	4	국지도로	136	둔율동 186-14 소2-8	둔율동 181-2 소2-735	일반도로		전북고136 ('87.10.22)	
변경	소로	3	4-18	4	국지도로	136	둔율동 186-14 소2-8	둔율동 181-2 소2-735	일반도로		전북고136 ('87.10.22)	

2)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대로3-2	대로3-2	• 노선선형변경 면적변경 : 132m ²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선형변경	
중로1-1	중로1-1	• 노선선형변경 면적변경 : 340m ²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선형변경	
중로1-3	중로1-3	• 노선선형변경 면적변경 : 214m ²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선형변경	
중로2-1	중로2-1	• 노선선형변경 면적변경 : 153m ²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선형변경	
중로2-2	중로2-2	• 노선선형변경 면적변경 : 132m ²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선형변경	
중로3-50	중로3-50	• 노선선형변경 면적변경 : 72m ²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선형변경	
소로1-14	소로1-14	• 노선선형변경 면적변경 : 52m ²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선형변경	
소로1-15	소로1-15	• 노선선형변경 면적변경 : 1,891m ²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선형변경	
소로1-16	소로1-16	• 노선선형변경 면적변경 : 15m ²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선형변경	
소로1-17	소로1-17	• 노선선형변경 면적변경 : 65m ²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선형변경	
소로1-18	소로1-18	• 노선선형변경 면적변경 : 74m ²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선형변경	
소로1-19	소로1-19	• 노선선형변경 면적변경 : 83m ²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선형변경	
소로1-20	소로1-20	• 노선선형변경 면적변경 : 148m ²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선형변경	
소로1-21	소로1-21	• 노선선형변경 면적변경 : 101m ²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선형변경	
소로1-22	소로1-22	• 노선선형변경 면적변경 : 11m ²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선형변경	
소로1-23	소로1-23	• 노선선형변경 면적변경 : 72m ²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선형변경	
소로1-24	소로1-24	• 노선선형변경 면적변경 : 116m ²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선형변경	
소로1-296	소로1-296	• 노선선형변경 면적변경 : 9m ²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선형변경	
소로2-3	소로2-3	• 노선선형변경 면적변경 : 61m ²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선형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소로2-4	소로2-4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18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2-6	소로2-6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175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2-8	소로2-8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167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2-9	소로2-9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29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2-12	소로2-12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27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2-13	소로2-13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19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2-63	소로2-63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215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2-735	소로2-735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77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2-742	소로2-742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115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2-755	소로2-755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35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3-4	소로3-4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173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3-8	소로3-8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11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3-69	소로3-69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37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3-70	소로3-70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78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3-72	소로3-72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7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3-73	소로3-73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3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3-74	소로3-74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59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3-448	소로3-448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17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3-9	소로3-9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115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3-4-6	소로3-4-6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13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소로3-4-18	소로3-4-18	• 노선선형 변경 면적변경 : 25m ²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선형변경	

2.2 주차장

1)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6	주차장	둔율동 194일원	1,115	증)43	1,158	군산고94 (2009.11.)	

2)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6	주차장	면적 : 1,115㎡ -> 1,158㎡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경계변경

3. 공간시설

3.1 공원

1)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제4공원	소공원	월명동 25-3일원	661	감)21	640	군산고94 (2009.11.)	

2)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7	제4공원	면적 : 661㎡ -> 640㎡	지적재조사사업에따른 경계변경

4. 공공문화체육시설

4.1 학교

1)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중앙초교	초등학교	중앙로2가 56-3일원	24,911	증)10	24,921	전북고171 (81.06.29)	
변경	17	군산여고	고등학교	월명동 37-1일원	28,744	감)337	28,407	전북고100 (81.11.19)	

2) 학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중앙초교	면적 : 24,911㎡ -> 24,921㎡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변경
17	군산여고	면적 : 28,744㎡ -> 28,407㎡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변경

5. 방재시설

5.1 유수지

1)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유수지	유수시설	중앙로1가 10-1일원	760	증)1	761	군산고106 (2012.9.21.)	

2) 유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유수지	면적 : 760㎡ -> 761㎡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변경

II.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도서 : 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6-135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군산교도소)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군산시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군산교도소)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4-352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6년 10월 28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군산교도소)
 - 나. 명 칭 : 군산교도소 비상대기숙소 증축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가. 부지면적 : 182,890㎡
 - 나. 건축규모 : 숙소 1동 증축

구 분	기 준	금 회	계
동수	44동	1동	45동
건축면적	20,832.07㎡(11.39%)	311.46㎡(0.17%)	21,143.53㎡(11.56%)
건축연면적	40,232.18㎡(19.65%)	998.80㎡(0.55%)	41,230.98㎡(20.2%)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정부과천청사 1동)
 - 나. 성 명 : 법무부장관
5.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1.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 실음 생략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실음 생략

전라북도 군산시 고시 제 2016- 137호

국가기초구역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가기초구역 변경 현황 도면과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 지번 현황 조서는 군산시 토지정보과 (☎063-454-3983)에 비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10월 27일

군산시장

1. 국가기초구역 변경 현황

시군구명	설정 등 현황			예비구역번호 수
	설정	변경	폐지	
군산시	0	1	0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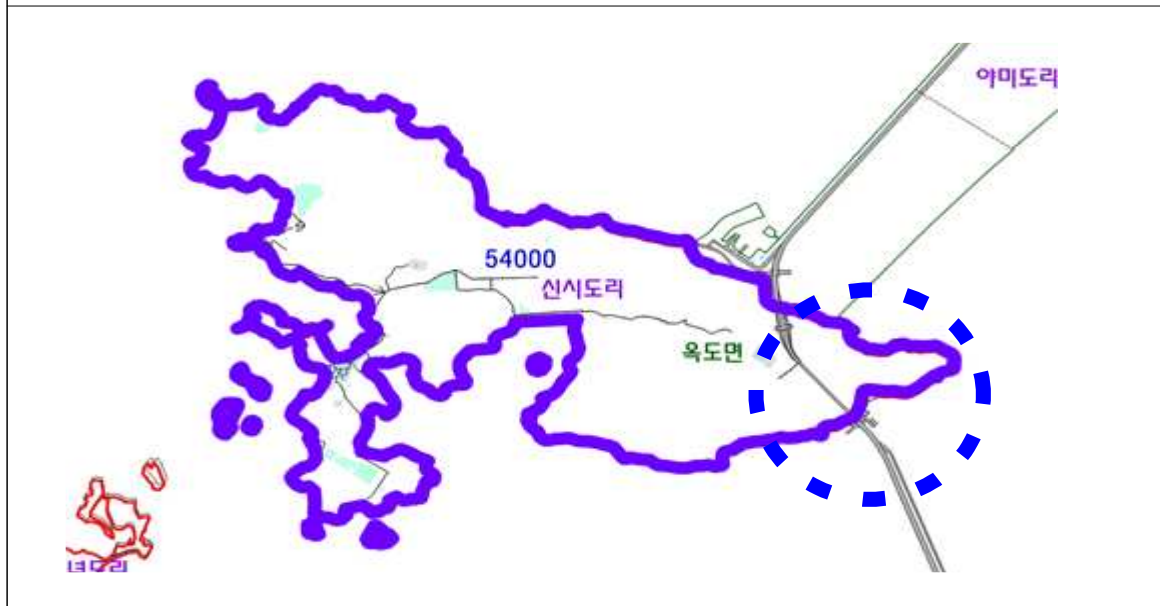
- 국가기초구역 변경 현황은 따로 붙입니다.

※ 국가기초구역 변경 첨부파일은 군산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국가기초구역 내 도로명주소·지번현황 조서는 군산시보 게재를 생략합니다. 또한, 자료량이 많아 파일 게시가 곤란할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초구역 변경 현황

※ 도면은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이나 군산시 토지정보과에 비치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따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구역번호	54000
국가기초구역 설정기준	시군구경계 및 지적선로(으로) 이루어진 동일생활권.
국가기초구역 설정·변경 및 폐지 사유	새만금 매립지(방조제구간)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15. 11. 13.)



면적	20.416	km ²	주민 수	3785	명
----	--------	-----------------	------	------	---

군산시 고시 제 2016 - 138호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전라북도 고시 제2011-329호(2011. 10. 28)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수립을 고시하고, 「도시개발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인가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 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지형도면등의 작성·고시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군 산 시 장

I.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없음)

-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8-73번지 일원
- 면 적 : 864,295㎡ → 864,284.9㎡(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라 10.1㎡ 감소)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군산 도시발전축에 입지한 사업대상지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도모
- 적정공공편익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한 합리적 도시공간구조 형성
- 인근 수송지구와의 계획적인 연계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다양한 계층 및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의 조성
-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의 도시개발사업을 실현함으로써, 도시개발의 모범적 사례 구현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시행자 : 군산시장
- 주 소 : 전라북도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888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11. 10. 28 ~ 2016.9.20.(환지처분일)
- 시행방법 :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864,295	감) 10.1	864,284.9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370,647	감) 321.9	370,325.1	42.9	
	단 독 주 택	132,013	감) 100.2	131,912.8	15.3	
	공 동 주 택	146,378	감) 80.3	146,297.7	16.9	4개블록
	근린생활시설	92,256	감) 141.4	92,114.6	10.7	경찰 파출소용지 포함
상업 및 준주거 용지	소 계	66,070	감) 87.8	65,982.2	7.7	
	상 업 용 지	54,271	감) 70.6	54,200.4	6.3	일반상업
	준 주 거 용 지	11,799	감) 17.2	11,781.8	1.4	노선상가
공공 시설 용지	소 계	420,668	증) 401.4	421,069.4	48.6	
	공 공 청 사	13,047	-	13,047.0	1.5	농림축산검역본부, 세무서 주민센터
	학 교	21,138	-	21,138.0	2.4	초등학교 1개교
	도 로	268,349	증) 380.9	268,729.9	31.0	
	보 행 도 로	8,266	감) 28.9	8,237.1	1.0	
	주 차 장	9,422 (12,685)	감) 23.4	9,398.6 (12,661.6)	1.1 (1.6)	()는 소공원④와 중복결정한 지하주차장④를 포함한 면적임
	공 원	90,906	증) 85.4	90,991.4	10.5	
	녹 지	4,750	감) 10.1	4,739.9	0.5	
	공 공 공 지	1,944	감) 5.8	1,938.2	0.2	
	광 장	1,507	감) 0.1	1,506.9	0.2	
	철 도	1,339	증) 3.4	1,342.4	0.2	
저 류 지	(9,406)	-	(9,406)	(1.1)	근린공원 내 중복결정	
기타 시설 용지	소 계	6,910	감) 1.8	6,908.2	0.8	
	주 유 소	764	감) 3.8	760.2	0.1	기존시설 존치
	중 교 시 설	6,146	증) 2.0	6,148.0	0.7	기존 시설 포함 3개소

※ ()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포함한 면적임

나. 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합계	기정	137 (126)	32,375 (19,097)	672,470 (276,615)	18 (14)	10,649 (5,125)	289,038 (88,722)	61 (56)	17,897 (10,678)	349,464 (137,361)	58 (56)	3,829 (3,314)	33,968 (31,482)
	변경	138 (127)	32,430 (19,117)	672,470 (276,967.0)	18 (15)	10,669 (5,145)	289,038 (100,255.9)	61 (56)	17,886 (10,658)	349,464 (145,135)	59 (56)	3,829 (3,314)	33,968 (31,606.1)
대로	기정	5 (4)	13,995 (3,289)	451,860 (86,812)	3 (3)	6,402 (2,206)	224,070 (54,322)	2 (1)	7,593 (1,083)	227,790 (32,490)	-	-	-
	변경	5 (4)	13,995 (3,289)	451,860 (96,383.4)	3 (3)	6,402 (2,206)	224,070 (60,433.2)	2 (1)	7,593 (1,083)	227,790 (35,950.2)	-	-	-
중로	기정	37 (32)	9,963 (8,349)	154,138 (110,669)	4 (3)	2,140 (1,270)	43,778 (18,110)	24 (21)	5,585 (5,018)	83,928 (68,261)	9 (8)	2,238 (2,061)	26,468 (24,298)
	변경	37 (32)	9,972 (8,349)	154,138 (119,688.7)	4 (3)	2,160 (1,290)	43,778 (22,869.8)	24 (21)	5,574 (4,998)	83,928 (71,366.6)	9 (8)	2,238 (2,061)	26,468 (25,452.3)
소로	기정	95 (90)	8,417 (7,459)	66,472 (59,084)	11 (8)	2,107 (1,629)	21,190 (16,290)	35 (34)	4,719 (4,577)	37,746 (36,610)	49 (48)	1,591 (1,253)	7,500 (6,184)
	변경	96 (91)	8,463 (7,479)	66,472 (60,894.9)	11 (9)	2,107 (1,649)	21,190 (16,922.9)	35 (34)	4,719 (4,577)	37,746 (37,818.2)	50 (48)	1,637 (1,253)	7,500 (6,153.8)
가각 및 완화 차선	기정			20,050									
	변경			-									

※ ()는 사업지구 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도로	5,500 (1,304)	문화동 광2-3	윤희리 13호광장	일반 도로		건고525 (` 67.7.25)	
기정	대로	1	20	35	주간선도로	460 (460)	대로 1-1	대로 2-6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대로	1	21	35	주간선도로	442 (442)	대로 2-6	대로 2-2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대로	2	2	30	주간선도로	1,746 (0)	경암동 대2-4	대로 1-21	일반 도로		건고525 (` 67.7.25)	
기정	대로	2	6	30	보조간선도로	5,847 (1,083)	수송동 광2-3	개정동 대로 1-1	일반 도로		건고228 (` 86.5.23)	
소 계		5개 노선				13,995 (3,289)						

※ ()는 사업지구 내 연장임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644 (664)	대로 2-6	중로 1-20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중로	1	20	20~22	보조간선도로	670 (428)	수송동 대로 2-5	수송동 대로 2-6	일반 도로		군산고210 (` 96.6.1)	
기정	중로	1	21	20~22	보조간선도로	472 (0)	대로 1-1	대로 2-6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60	20	집산도로	354 (198)	대로1-21	중로 1-22	일반 도로		군산고210 (` 96.6.1)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308 (308)	대로 1-21	중로 1-1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35 (35)	대로 1-21	중로 2-3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859 (859)	중로 2-6	중로 2-6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중로	2	4	15	국지도로	146 (146)	중로 2-3	중로 2-7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중로	2	5	15	국지도로	102 (102)	중로 2-4	중로 2-7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중로	2	6	15	국지도로	109 (109)	대로 2-6	중로 2-7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중로	2	7	15	국지도로	222 (222)	대로 2-3	중로 2-3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중로	2	8	15	국지도로	35 (35)	대로 1-21	중로 2-3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중로	2	9	15	국지도로	60 (60)	중로 2-3	중로 2-4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중로	2	10	15	국지도로	240 (240)	대로 2-6	중로 2-13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중로	2	11	15	국지도로	237 (237)	대로 2-6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중로	2	12	15	집산도로	244 (244)	대로 2-6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중로	2	13	15	집산도로	572 (572)	대로 1-20	중로 1-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중로	2	14	15	집산도로	854 (854)	대로 1-20	대로 1-1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중로	2	15	15	집산도로	205 (205)	대로 1-1	중로 2-13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중로	2	16	15	국지도로	167 (167)	중로 3-5	중로 2-13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중로	2	17	15	국지도로	168 (168)	중로 3-6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중로	2	18	15	집산도로	208 (208)	대로 1-1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중로	2	19	15	집산도로	193 (193)	대로 1-1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 11.10.28)	

기정	중로	2	20	15	특수도로	27 (27)	대로 1-1	중로 3-5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21	15	특수도로	27 (27)	대로 1-1	중로 3-6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 ()는 사업지구 내 연장임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경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 (m)								
기정	중로	2	23	15	집산도로	179 (0)	미장동 중로1-20	소로 2-2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29	15	집산도로	143 (0)	중로 1-1	미장동 중로1-22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기정	중로	2	30	15	집산도로	245 (0)	미장동 대로2-6	미장동 중로2-13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155 (155)	중로 2-10	중로 2-30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271 (271)	중로 2-10	중로 2-10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270 (270)	중로 2-11	중로 2-1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159 (159)	중로 2-11	중로 2-12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404 (404)	중로 2-16	중로 2-15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3	6	12	국지도로	414 (414)	중로 2-17	중로 2-18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7	12	집산도로	87 (54)	중로 1-60	소로 2-500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3	8	12	집산도로	334 (334)	대로 2-6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3	25	12	집산도로	144 (0)	중로 2-19	중로 2-14	일반 도로			
소 계		37개 노선				9,972 (8,349)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20 (220)	중로 1-1	중로 2-23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86 (186)	중로 1-20	소로 1-19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25 (125)	소로 1-194	중로 1-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506 (506)	중로 1-1	중로 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25 (25)	소로 1-4	대로 1-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32 (132)	중로 1-60	중로 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227 (227)	소로 1-8	소로 1-8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208 (208)	중로 2-14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188	10	국지도로	192 (0)	소로 2-500	중로 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91	10	국지도로	55 (0)	중로 2-1	소로 2-500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기정	소로	1	194	10	국지도로	231 (0)	대로 2-6	중로 2-23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1	194	10 ~12	국지도로	231 (20)	대로 2-6	중로 2-23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일부구간 폭 확장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52 (252)	소로 1-1	소로 1-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 ()는 사업지구 내 연장임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경 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24 (124)	중로 2-23	중로 1-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43 (143)	소로 2-5	소로 2-5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43 (143)	소로 2-5	소로 2-5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359 (359)	소로 1-194	소로 1-19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88 (188)	소로 2-8	소로 2-9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16 (116)	소로 2-6	소로 2-9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228 (228)	중로 1-1	소로 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87 (87)	중로 2-1	소로 2-8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108 (108)	소로 2-9	소로 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93 (93)	소로 2-9	소로 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88 (88)	중로 1-60	소로 2-500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72 (72)	중로 3-7	소로 2-12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172 (172)	중로 3-1	소로 2-17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171 (171)	중로 3-1	소로 2-17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171 (171)	중로 3-1	소로 2-17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155 (155)	중로 2-30	중로 2-10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166 (166)	중로 3-4	소로 2-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166 (166)	중로 3-4	소로 2-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167 (167)	중로 3-4	소로 2-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1	8	국지도로	161 (161)	중로 2-11	중로 2-12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2	8	국지도로	133 (133)	소로 2-25	중로 3-5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3	8	국지도로	134 (134)	소로 2-25	중로 3-5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4	8	국지도로	134 (134)	소로 2-25	중로 3-5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5	8	국지도로	154 (154)	중로 2-15	중로 2-16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6	8	국지도로	135 (135)	소로 2-29	중로 3-6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 ()는 사업지구 내 연장임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7	8	특수도로	26 (26)	소로 2-29	어린이 공원3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2	28	8	국지도로	135 (135)	소로 2-29	중로 3-6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9	8	국지도로	162 (162)	중로 2-17	중로 2-18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30	8	국지도로	77 (77)	소로 2-12	소로 1-6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31	8	국지도로	39 (39)	소로 2-30	소로 2-500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32	8	특수도로	25 (25)	대로 1-21	중로 2-3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33	8	특수도로	58 (58)	중로 2-3	중로 2-7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34	8	특수도로	35 (35)	중로 2-6	중로 2-3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500	8	국지도로	142 (0)	미장동 56-4답	미장동 54-3대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기정	소로	3	246	6	국지도로	46 (0)	조촌동765-1 대1-3	조촌동765-2 소4-88	일반 도로		전북고135 (`78.5.22)	
기정	소로	3	488	4	국지도로	338 (0)	조촌동 소3-246	조촌동 소2-254	일반 도로		권고66호 (`74.6.12)	
기정	소로	3	1	5	특수도로	11 (11)	중로 1-1	소로 2-1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	5	특수도로	11 (11)	중로 1-1	소로 2-6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	5	특수도로	13 (13)	소로 2-2	소로 2-1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	5	특수도로	28 (28)	소로 1-194	소로 2-3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5	5	특수도로	28 (28)	소로 2-3	소로 2-4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6	5	특수도로	28 (28)	소로 2-4	소로 2-5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7	5	특수도로	17 (17)	소로 2-5	중로 1-1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8	5	특수도로	19 (19)	대로 2-6	소로 1-2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변경	소로	3	8	3	특수도로	19 (19)	대로 2-6	소로 1-2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도로폭 축소
기정	소로	3	9	5	특수도로	10 (10)	소로 1-3	소로 2-5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0	5	특수도로	28 (28)	대로 2-6	소로 1-4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1	5	특수도로	17 (17)	소로 1-4	대로 1-21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2	5	특수도로	28 (28)	소로 1-4	대로 1-21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3	5	특수도로	28 (28)	중로 3-1	대로 2-6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 ()는 사업지구 내 연장임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경 과 지	최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 원 (m)								
기정	소로	3	14	5	특수도로	17 (17)	중로 3-2	대로 1-20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5	5	특수도로	19 (19)	대로 1-20	중로 3-3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6	5	특수도로	25 (25)	중로 3-4	대로 2-6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7	5	특수도로	32 (32)	중로 2-30	소로 2-14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8	5	특수도로	33 (33)	소로 2-14	소로 2-15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9	5	특수도로	33 (33)	소로 2-16	중로 2-10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0	5	특수도로	40 (40)	중로 2-10	중로 3-2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1	5	특수도로	30 (30)	중로 3-2	대로 1-20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2	5	특수도로	30 (30)	대로 1-20	중로 3-3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3	5	특수도로	40 (40)	중로 3-3	중로 2-11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4	5	특수도로	34 (34)	중로 2-11	소로 2-18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5	5	특수도로	34 (34)	소로 2-18	소로 2-19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7	5	특수도로	34 (34)	소로 2-20	중로 2-12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8	5	특수도로	25 (25)	중로 2-13	소로 2-17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9	5	특수도로	17 (17)	중로 3-2	대로 1-20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0	5	특수도로	19 (19)	대로 1-20	중로 3-3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1	5	특수도로	25 (25)	중로 2-14	소로 2-21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2	5	특수도로	25 (25)	소로 2-25	중로 2-13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3	5	특수도로	19 (19)	중로 3-5	대로 1-20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4	5	특수도로	19 (19)	대로 1-20	중로 3-6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5	5	특수도로	25 (25)	소로 2-29	중로 2-14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6	5	특수도로	33 (33)	중로 2-15	소로 2-22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7	5	특수도로	32 (32)	소로 2-22	소로 2-23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8	5	특수도로	32 (32)	소로 2-23	소로 2-24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9	5	특수도로	32 (32)	소로 2-24	중로 2-16	보행자도로		군산고329 (`11.10.28)	

※ ()는 사업지구 내 연장임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과 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 별	번호	폭 월 (m)								
기정	소로	3	40	5	특수도로	40 (40)	중로 2-16	중로 3-5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1	5	특수도로	30 (30)	중로 3-5	대로 1-20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2	5	특수도로	30 (30)	대로 1-20	중로 3-6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3	5	특수도로	40 (40)	중로 3-6	중로 2-17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4	5	특수도로	34 (34)	중로 2-17	소로 2-26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6	2.5	특수도로	34 (34)	소로 2-28	중로 2-18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47	5	특수도로	19 (19)	중로 3-5	대로 1-20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8	5	특수도로	19 (19)	대로 1-20	중로 3-6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9	5	특수도로	12 (12)	근린공원4	소로 1-7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50	5	특수도로	25 (25)	중로 2-14	소로 1-8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소 계		96개 노선				8,463 (7,479)						

※ ()는 사업지구 내 연장임

○ 주차장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	9,422 (12,685)	감) 23,4	9,398.6 (12,661.6)	
변경	1	주차장	미장동 54-67답 일원	446	증) 0.4	446.4	
변경	2	주차장	미장동 56-8답 일원	542	증) 1.1	543.1	
변경	3	주차장	미장동 57-5답 일원	917	감) 1.9	915.1	
기정	4	주차장	미장동 58-6답 일원	(3,263)	-	(3,263)	소공원4와 중복결정 (지하주차장)
변경	5	주차장	미장동 59-47답 일원	1,056	감) 2.8	1,053.2	
변경	6	주차장	미장동 59-20답 일원	784	감) 1.8	782.2	
변경	7	주차장	미장동 60-16답 일원	784	감) 0.8	783.2	
변경	8	주차장	미장동 60-25답 일원	781	감) 4.9	776.1	
변경	9	주차장	미장동 61-21답 일원	782	감) 1.9	780.1	
변경	10	주차장	미장동 61-2답 일원	459	증) 0.6	459.6	
변경	11	주차장	조촌동 255답 일원	484	감) 2.6	481.4	
변경	12	주차장	미장동 58-2답 일원	2,387	감) 8.8	2,378.2	

※ ()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포함한 면적임

○ 철 도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	-	1,339	증) 3.4	1,342.4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미장동 54-67답 일원	1,339	증) 3.4	1,342.4	

2) 공간시설계획

○ 공 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	계	-		-	90,906	증) 85.4	90,991.4	
소계				-	64,125	증) 94.7	64,219.7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미장동 52-15층 일원	10,235	증) 0.5	10,235.5	
변경	2	공원	근린공원	미장동 57-14답 일원	19,615	감) 11.7	19,603.3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미장동 59-35답 일원	10,340	-	10,340	
변경	4	공원	근린공원	조촌동 254답 일원	23,935	증) 105.9	24,040.9	
소계				-	16,623	감) 14.3	11,608.7	
변경	1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54-14답 일원	2,459	감) 2.7	2,456.3	
변경	2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58-23답 일원	1,560	감) 2.4	1,557.6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62-15답 일원	1,500	-	1,500.0	
변경	4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56-4답 일원	1,590	감) 1.4	1,588.6	
변경	5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64-33답 일원	2,515	감) 6.3	2,508.7	
변경	6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60-12답 일원	1,999	감) 1.5	1,997.5	
소계				-	15,158	증) 5.0	15,163.0	
변경	1	공원	소공원	미장동 57-12답 일원	540	감) 2.6	537.4	
변경	2	공원	소공원	미장동 58-10답 일원	658	감) 1.6	656.4	
변경	3	공원	소공원	미장동 58-9답 일원	1,168	감) 5.1	1,162.9	
변경	4	공원	소공원	미장동 58-6답 일원	3,263	감) 7.7	3,255.3	
변경	5	공원	소공원	미장동 58-4답 일원	931	감) 1.8	929.2	
변경	6	공원	소공원	미장동 58-1답 일원	4,705	증) 23.8	4,728.8	
변경	7	공원	소공원	조촌동 253-3답 일원	1,317	감) 2.8	1,314.2	
변경	8	공원	소공원	미장동 456-20구일원	2,576	증) 2.8	2,578.8	

○ 녹 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	-	70,217 (4,750)	감) 10.1	70,206.9 (4,739.9)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미장동 59-39답 일원	2,154 (2,154)	감) 8.6	2,145.4 (2,145.4)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미장동 64-6대 일원	2,596 (2,154)	감) 1.5	2,594.5 (2,145.4)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 244-1전 일원	65,467 (0)	-	65,467 (0)	

※ ()는 사업지구 내 면적임

○ 광 장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	-	1,507	감) 0.1	1,506.9	
변경	1	광장	경관광장	조촌동 765-4대 일원	1,507	감) 0.1	1,506.9	

○ 공공공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	1,944	감) 5.8	1,938.2	
변경	1	공공공지	미장동 56-23답 일원	85	증) 0.6	85.6	
변경	2	공공공지	미장동 56-120답 일원	86	감) 0.1	85.9	
변경	3	공공공지	미장동 62-17답 일원	886	감) 3.1	882.9	
변경	4	공공공지	미장동 62-15답 일원	887	감) 3.2	883.8	

3) 공공·문화체육시설 계획

○ 학 교(변경없음)

-계재 생략-

○ 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	-	13,047	감) 0.1	13,047.0	
변경	1	공공청사	주민센터	미장동 56-83답 일원	920	감) 0.4	919.6	
변경	2	공공청사	세무서	미장동 61-4답 일원	7,029	증) 0.4	7,029.4	
기정	3	공공청사	농림축산 검역본부	미장동 62-16 일원	5,098	-	5,098	

4) 방재시설계획(변경없음)

○ 저류지(변경없음)

-계재 생략-

5) 기타용지계획

○ 주유소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계	-	-	764	감) 3.8	760.2	
변경	1	주유소	미장동 62-72주 일원	764	감) 3.8	760.2	

○ 종교시설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	6,146	증) 2.0	6,148.0	
변경	1	종교시설	미장동 52-24답 일원	2,966	증) 3.3	2,969.3	
변경	2	종교시설	조촌동 253-1답 일원	1,322	감) 1.3	1,320.7	
변경	3	종교시설	조촌동 241-1종 일원	1,858	-	1858	

다. 인구수용계획(변경없음)

-계재 생략-

7.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군산 미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8-73번지 일원	864,295	감) 10.1	864,284.9	

8.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계재 생략-

9.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공람장소 : 군산시청 공영사업과(063-454-366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관계도서:도면포함, 계재 생략)
- 공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

II. 실시계획(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군산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군산 도시발전축에 입지한 사업대상지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도모
- 적정공공편익 및 도시기반시설의 확보를 통한 합리적 도시공간구조 형성
- 인근 수송지구와의 계획적인 연계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 다양한 계층 및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도시의 조성
-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한 민·관 협력의 도시개발사업을 실현함으로써, 도시개발의 모범적 사례 구현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미장동 58-73번지 일원
- 면적 : 864,295㎡ → 864,284.9㎡(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라 10.1㎡ 감소)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시행자 : 군산시장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시행기간 : 2011. 10. 28 ~ 환지처분일
- 시행방법 :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

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변경) 내용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

1) 군산시 총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456,524,971	감) 10.1	456,524,960.9	100.00		
도 시 지 역	합 계	207,398,894	감) 10.1	207,398,883.9	45.43		
	소 계	18,820,617	감) 110.2	18,820,506.8	4.12		
	주 거 지 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52,497	-	52,497	0.01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4,592,501	감) 1.3	4,592,499.7	1.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546,960	감) 120.8	11,546,839.2	2.53	
		제3종일반주거지역	2,124,996	-	2,124,996	0.47	
		준 주 거 지 역	503,663	증) 11.9	503,674.9	0.11	
		소 계	3,686,551	증) 28.5	3,686,579.5	0.81	
	상 업 지 역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3,686,551	증) 28.5	3,686,579.5	0.81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소 계	28,111,457	-	28,111,457	6.16	
	공 업 지 역	전용공업지역	23,082,414	-	23,082,414	5.06	
		일반공업지역	1,214,780	-	1,214,780	0.27	
		준공업지역	3,814,263	-	3,814,263	0.83	
		소 계	82,054,777	증) 71.6	82,054,848.6	17.97	
	녹 지 지 역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38,435,194	-	38,435,194	8.42	
자연녹지지역		43,619,583	증) 71.6	43,619,654.6	9.55		
미지정		74,725,492	-	74,725,492	16.37		
비 도 시 지 역	합 계	249,126,077	-	249,126,077	54.57		
	소 계	127,640,978	-	127,640,978	27.96		
	관 리 지 역	보전관리지역	79,791,650	-	79,791,650	17.48	
		생산관리지역	18,990,000	-	18,990,000	4.16	
		계획관리지역	28,859,328	-	28,859,328	6.32	
		관리지역(미세분)	-	-	-	-	
		농림지역	119,608,099	-	119,608,099	26.20	
	자연환경보전지역	1,877,000	-	1,877,000	0.41		
	미지정	-	-	-	-		

※ 기정 고시 : 전라북도고시 제2014-144호('14.5.16)

2) 군산미장지구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도시 지역	합 계	864,295	감) 10.1	864,284.9	100.0		
	소 계	676,645	감) 110.2	676,534.8	78.4		
	주거 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244,241	감) 1.3	244,239.7	28.3	
		제2종일반주거지역	402,396	감) 120.8	402,275.2	46.6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30,008	증) 11.9	30,019.9	3.5	
	상업 지역	소 계	110,596	증) 28.5	110,624.5	12.8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10,596	증) 28.5	110,624.5	12.8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 지역	소 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지 지역	소 계	77,054	증) 71.6	77,125.6	8.8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	-	-	-		
	자연녹지지역	77,054	증) 71.6	77,125.6	8.8		

○ 용도지구별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864,295	감) 10.1	864,284.9	
-	전북 군산시 미장동 58-73번지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244,241	감) 1.3	244,239.7	확정측량 결과반영
-		제2종 일반주거지역	402,396	감) 120.8	402,275.2	
-		준주거지역	30,008	증) 11.9	30,019.9	
-		일반상업지역	110,596	증) 28.5	110,624.5	
-		자연녹지지역	77,054	증) 71.6	77,125.6	

나.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

○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연 장 (m)	폭 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1	미관지구	일반미관지 구	미장동 대로 1-20호선, 1-21호선	33,280 (30,280)	1,664 (1,514)	20	전북고111 (`95.6.29)	
변경	11	미관지구	일반미관지 구	미장동 대로 1-20호선, 1-21호선	33,280 (30,150.1)	1,664 (1,514)	20	전북고111 (`95.6.29)	
기정	13	미관지구	일반미관지 구	미장동 대로 1-1호선변	14,300 (9,300)	715 (465)	20	전북고111 (`95.6.29)	
변경	13	미관지구	일반미관지 구	미장동 대로 1-1호선변	14,300 (8,776.4)	715 (465)	20	전북고111 (`95.6.29)	

※ ()는 사업지구 내 면적 및 연장임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비고
11	미관지구	확정측량 결과반영	
13	미관지구	기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라 형태 변경 및 확정측량 결과반영 - 9,300㎡ → 8,776.4㎡ (감 523.6㎡)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1) 도 로(변경)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노선수	연 장	면 적	
합계	기정	137 (126)	32,375 (19,097)	672,470 (276,615)	18 (14)	10,649 (5,125)	289,038 (88,722)	61 (56)	17,897 (10,678)	349,464 (137,361)	58 (56)	3,829 (3,314)	33,968 (31,482)
	변경	138 (127)	32,430 (19,117)	672,470 (276,967.0)	18 (15)	10,669 (5,145)	289,038 (100,255.9)	61 (56)	17,886 (10,658)	349,464 (145,135)	59 (56)	3,829 (3,314)	33,968 (31,606.1)
대로	기정	5 (4)	13,995 (3,289)	451,860 (86,812)	3 (3)	6,402 (2,206)	224,070 (54,322)	2 (1)	7,593 (1,083)	227,790 (32,490)	-	-	-
	변경	5 (4)	13,995 (3,289)	451,860 (96,383.4)	3 (3)	6,402 (2,206)	224,070 (60,433.2)	2 (1)	7,593 (1,083)	227,790 (35,950.2)	-	-	-
중로	기정	37 (32)	9,963 (8,349)	154,138 (110,669)	4 (3)	2,140 (1,270)	43,778 (18,110)	24 (21)	5,585 (5,018)	83,928 (68,261)	9 (8)	2,238 (2,061)	26,468 (24,298)
	변경	37 (32)	9,972 (8,349)	154,138 (119,688.7)	4 (3)	2,160 (1,290)	43,778 (22,869.8)	24 (21)	5,574 (4,998)	83,928 (71,366.6)	9 (8)	2,238 (2,061)	26,468 (25,452.3)
소로	기정	95 (90)	8,417 (7,459)	66,472 (59,084)	11 (8)	2,107 (1,629)	21,190 (16,290)	35 (34)	4,719 (4,577)	37,746 (36,610)	49 (48)	1,591 (1,253)	7,500 (6,184)
	변경	96 (91)	8,463 (7,479)	66,472 (60,894.9)	11 (9)	2,107 (1,649)	21,190 (16,922.9)	35 (34)	4,719 (4,577)	37,746 (37,818.2)	50 (48)	1,637 (1,253)	7,500 (6,153.8)
가각 및 완화 차선	기정			20,050									
	변경			-									

※ ()는 사업지구 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	35	주간선도로	5,500 (1,304)	문화동 광2-3	운회리 13호광장	일반 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대로	1	20	35	주간선도로	460 (460)	대로 1-1	대로 2-6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대로	1	21	35	주간선도로	442 (442)	대로 2-6	대로 2-2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대로	2	2	30	주간선도로	1,746 (0)	경암동 대2-4	대로 1-21	일반 도로		건고525 (`67.7.25)	
기정	대로	2	6	30	보조선도로	5,847 (1,083)	수송동 광2-3	개정동 대로 1-1	일반 도로		건고228 (`86.5.23)	
소 계		5개 노선				13,995 (3,289)						

※ ()는 사업지구 내 연장임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집산도로	644 (664)	대로 2-6	중로 1-20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1	20	20~ 22	보조간선도로	670 (428)	수송동 대로 2-5	수송동 대로 2-6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기정	중로	1	21	20~ 22	보조간선도로	472 (0)	대로 1-1	대로 2-6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60	20	집산도로	354 (198)	대로1-21	중로 1-22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308 (308)	대로 1-21	중로 1-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35 (35)	대로 1-21	중로 2-3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859 (859)	중로 2-6	중로 2-6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4	15	국지도로	146 (146)	중로 2-3	중로 2-7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5	15	국지도로	102 (102)	중로 2-4	중로 2-7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6	15	국지도로	109 (109)	대로 2-6	중로 2-7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7	15	국지도로	222 (222)	대로 2-3	중로 2-3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8	15	국지도로	35 (35)	대로 1-21	중로 2-3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9	15	국지도로	60 (60)	중로 2-3	중로 2-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10	15	국지도로	240 (240)	대로 2-6	중로 2-13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11	15	국지도로	237 (237)	대로 2-6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12	15	집산도로	244 (244)	대로 2-6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13	15	집산도로	572 (572)	대로 1-20	중로 1-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14	15	집산도로	854 (854)	대로 1-20	대로 1-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15	15	집산도로	205 (205)	대로 1-1	중로 2-13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16	15	국지도로	167 (167)	중로 3-5	중로 2-13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17	15	국지도로	168 (168)	중로 3-6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18	15	집산도로	208 (208)	대로 1-1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19	15	집산도로	193 (193)	대로 1-1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20	15	특수도로	27 (27)	대로 1-1	중로 3-5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2	21	15	특수도로	27 (27)	대로 1-1	중로 3-6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 ()는 사업지구 내 연장임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3	15	집산도로	179 (0)	미장동 중로1-20	소로 2-2	일반 도로			
기정	중로	2	29	15	집산도로	143 (0)	중로 1-1	미장동 중로1-22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기정	중로	2	30	15	집산도로	245 (0)	미장동 대로2-6	미장동 중로2-13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155 (155)	중로 2-10	중로 2-30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271 (271)	중로 2-10	중로 2-10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270 (270)	중로 2-11	중로 2-1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159 (159)	중로 2-11	중로 2-12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404 (404)	중로 2-16	중로 2-15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3	6	12	국지도로	414 (414)	중로 2-17	중로 2-18	일반 도로			
기정	중로	3	7	12	집산도로	87 (54)	중로 1-60	소로 2-500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3	8	12	집산도로	334 (334)	대로 2-6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중로	3	25	12	집산도로	144 (0)	중로 2-19	중로 2-14	일반 도로			
소 계		37개 노선				9,972 (8,349)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20 (220)	중로 1-1	중로 2-23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86 (186)	중로 1-20	소로 1-19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25 (125)	소로 1-194	중로 1-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506 (506)	중로 1-1	중로 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25 (25)	소로 1-4	대로 1-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32 (132)	중로 1-60	중로 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227 (227)	소로 1-8	소로 1-8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208 (208)	중로 2-14	중로 2-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1	188	10	국지도로	192 (0)	소로 2-500	중로 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91	10	국지도로	55 (0)	중로 2-1	소로 2-500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기정	소로	1	194	10	국지도로	231 (0)	대로 2-6	중로 2-23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변경	소로	1	194	10 ~12	국지도로	231 (20)	대로 2-6	중로 2-23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일부구간 폭 확장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252 (252)	소로 1-1	소로 1-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 ()는 사업지구 내 연장임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경 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124 (124)	중로 2-23	중로 1-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43 (143)	소로 2-5	소로 2-5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43 (143)	소로 2-5	소로 2-5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5	8	국지도로	359 (359)	소로 1-194	소로 1-19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188 (188)	소로 2-8	소로 2-9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7	8	국지도로	116 (116)	소로 2-6	소로 2-9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228 (228)	중로 1-1	소로 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87 (87)	중로 2-1	소로 2-8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108 (108)	소로 2-9	소로 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93 (93)	소로 2-9	소로 1-4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88 (88)	중로 1-60	소로 2-500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3	8	국지도로	72 (72)	중로 3-7	소로 2-12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4	8	국지도로	172 (172)	중로 3-1	소로 2-17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5	8	국지도로	171 (171)	중로 3-1	소로 2-17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6	8	국지도로	171 (171)	중로 3-1	소로 2-17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7	8	국지도로	155 (155)	중로 2-30	중로 2-10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8	8	국지도로	166 (166)	중로 3-4	소로 2-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19	8	국지도로	166 (166)	중로 3-4	소로 2-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0	8	국지도로	167 (167)	중로 3-4	소로 2-21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1	8	국지도로	161 (161)	중로 2-11	중로 2-12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2	8	국지도로	133 (133)	소로 2-25	중로 3-5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3	8	국지도로	134 (134)	소로 2-25	중로 3-5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4	8	국지도로	134 (134)	소로 2-25	중로 3-5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5	8	국지도로	154 (154)	중로 2-15	중로 2-16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6	8	국지도로	135 (135)	소로 2-29	중로 3-6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 ()는 사업지구 내 연장임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과 지	최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 별	변 호	폭 원 (m)								
기정	소로	2	27	8	특수도로	26 (26)	소로 2-29	어린이 공원3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2	28	8	국지도로	135 (135)	소로 2-29	중로 3-6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29	8	국지도로	162 (162)	중로 2-17	중로 2-18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30	8	국지도로	77 (77)	소로 2-12	소로 1-6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31	8	국지도로	39 (39)	소로 2-30	소로 2-500	일반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32	8	특수도로	25 (25)	대로 1-21	중로 2-3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33	8	특수도로	58 (58)	중로 2-3	중로 2-7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34	8	특수도로	35 (35)	중로 2-6	중로 2-3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2	500	8	국지도로	142 (0)	미장동 56-4답	미장동 54-3대	일반 도로		군산고210 (`96.6.1)	
기정	소로	3	246	6	국지도로	46 (0)	조촌동765-1 대1-3	조촌동765-2 소4-88	일반 도로		전북고135 (`78.5.22)	
기정	소로	3	488	4	국지도로	338 (0)	조촌동 소3-246	조촌동 소2-254	일반 도로		건고66호 (`74.6.12)	
기정	소로	3	1	5	특수도로	11 (11)	중로 1-1	소로 2-1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	5	특수도로	11 (11)	중로 1-1	소로 2-6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	5	특수도로	13 (13)	소로 2-2	소로 2-1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	5	특수도로	28 (28)	소로 1-194	소로 2-3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5	5	특수도로	28 (28)	소로 2-3	소로 2-4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6	5	특수도로	28 (28)	소로 2-4	소로 2-5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7	5	특수도로	17 (17)	소로 2-5	중로 1-1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8	5	특수도로	19 (19)	대로 2-6	소로 1-2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변경	소로	3	8	3	특수도로	19 (19)	대로 2-6	소로 1-2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도로폭 축 소
기정	소로	3	9	5	특수도로	10 (10)	소로 1-3	소로 2-5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0	5	특수도로	28 (28)	대로 2-6	소로 1-4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1	5	특수도로	17 (17)	소로 1-4	대로 1-21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2	5	특수도로	28 (28)	소로 1-4	대로 1-21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3	5	특수도로	28 (28)	중로 3-1	대로 2-6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 ()는 사업지구 내 연장임

구분	구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경 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4	5	특수도로	17 (17)	중로 3-2	대로 1-20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5	5	특수도로	19 (19)	대로 1-20	중로 3-3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6	5	특수도로	25 (25)	중로 3-4	대로 2-6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7	5	특수도로	32 (32)	중로 2-30	소로 2-14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8	5	특수도로	33 (33)	소로 2-14	소로 2-15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19	5	특수도로	33 (33)	소로 2-16	중로 2-10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0	5	특수도로	40 (40)	중로 2-10	중로 3-2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1	5	특수도로	30 (30)	중로 3-2	대로 1-20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2	5	특수도로	30 (30)	대로 1-20	중로 3-3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3	5	특수도로	40 (40)	중로 3-3	중로 2-11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4	5	특수도로	34 (34)	중로 2-11	소로 2-18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5	5	특수도로	34 (34)	소로 2-18	소로 2-19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7	5	특수도로	34 (34)	소로 2-20	중로 2-12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8	5	특수도로	25 (25)	중로 2-13	소로 2-17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29	5	특수도로	17 (17)	중로 3-2	대로 1-20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0	5	특수도로	19 (19)	대로 1-20	중로 3-3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1	5	특수도로	25 (25)	중로 2-14	소로 2-21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2	5	특수도로	25 (25)	소로 2-25	중로 2-13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3	5	특수도로	19 (19)	중로 3-5	대로 1-20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4	5	특수도로	19 (19)	대로 1-20	중로 3-6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5	5	특수도로	25 (25)	소로 2-29	중로 2-14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6	5	특수도로	33 (33)	중로 2-15	소로 2-22	보행자도 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7	5	특수도로	32 (32)	소로 2-22	소로 2-23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8	5	특수도로	32 (32)	소로 2-23	소로 2-24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39	5	특수도로	32 (32)	소로 2-24	중로 2-16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 ()는 사업지구 내 연장임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40	5	특수도로	40 (40)	중로 2-16	중로 3-5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1	5	특수도로	30 (30)	중로 3-5	대로 1-20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2	5	특수도로	30 (30)	대로 1-20	중로 3-6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3	5	특수도로	40 (40)	중로 3-6	중로 2-17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4	5	특수도로	34 (34)	중로 2-17	소로 2-26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6	2.5	특수도로	34 (34)	소로 2-28	중로 2-18	보행자 도로			
기정	소로	3	47	5	특수도로	19 (19)	중로 3-5	대로 1-20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8	5	특수도로	19 (19)	대로 1-20	중로 3-6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49	5	특수도로	12 (12)	근린공원4	소로 1-7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기정	소로	3	50	5	특수도로	25 (25)	중로 2-14	소로 1-8	보행자 도로		군산고329 (‘11.10.28)	
소 계		96개 노선				8,463 (7,479)						

※ ()는 사업지구 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 1-194	소로 1-194	·일부(L=20m)구간 폭원 확장 - 10m → 12m (증 2m)	시점부(L=20m 구간)에 보도설치를 위하여 도로폭 확장
소로3-8	소로3-8	·폭원 축소 - 5m → 3m (감 2m)	소로 1-194호선 일부구간 도로폭 확장으로 감소되는 체미지 확보를 위하여 도로폭 축소

2)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9,422 (12,685)	감) 23,4	9,398.6 (12,661.6)		
변경	1	노외주차장	미장동 54-67답 일원	446	증) 0.4	446.4	군산고329 (‘11.10.28)	
변경	2	노외주차장	미장동 56-8답 일원	542	증) 1.1	543.1	군산고329 (‘11.10.28)	
변경	3	노외주차장	미장동 57-5답 일원	917	감) 1.9	915.1	군산고329 (‘11.10.28)	
기정	4	노외주차장	미장동 58-6답 일원	(3,263)	-	(3,263)	군산고329 (‘11.10.28)	
변경	5	노외주차장	미장동 59-47답 일원	1,056	감) 2.8	1,053.2	군산고329 (‘11.10.28)	
변경	6	노외주차장	미장동 59-20답 일원	784	감) 1.8	782.2	군산고329 (‘11.10.28)	

변경	7	노외주차장	미장동 60-16답 일원	784	감) 0.8	783.2	군산고329 (`11.10.28)
변경	8	노외주차장	미장동 60-25답 일원	781	감) 4.9	776.1	군산고329 (`11.10.28)
변경	9	노외주차장	미장동 61-21답 일원	782	감) 1.9	780.1	군산고329 (`11.10.28)
변경	10	노외주차장	미장동 61-2답 일원	459	증) 0.6	459.6	군산고329 (`11.10.28)
변경	11	노외주차장	조촌동 255답 일원	484	감) 2.6	481.4	군산고329 (`11.10.28)
변경	12	노외주차장	미장동 58-2답 일원	2,387	감) 8.8	2,378.2	전북고72 (`16.04.29)

※ ()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을 포함한 면적임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노외주차장	· 면적변경 - 446 → 446.4m ² (증 0.4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2	노외주차장	· 면적변경 - 542 → 543.1m ² (증 1.1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3	노외주차장	· 면적변경 - 917 → 915.1m ² (감 1.9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5	노외주차장	· 면적변경 - 1,056 → 1,053.2m ² (증 2.8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6	노외주차장	· 면적변경 - 784 → 782.2m ² (감 1.8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7	노외주차장	· 면적변경 - 784 → 783.2m ² (감 0.8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8	노외주차장	· 면적변경 - 781 → 776.1m ² (감 4.9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9	노외주차장	· 면적변경 - 782 → 780.1m ² (감 1.9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10	노외주차장	· 면적변경 - 459 → 459.6m ² (증 0.6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11	노외주차장	· 면적변경 - 484 → 481.4m ² (감 2.6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12	노외주차장	· 면적변경 - 2,387 → 2,378.2m ² (감 8.8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3) 철 도(변경)

○ 철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1,339	증) 3.4	1,342.4		
변경	1	철도	일반철도	조촌동 723철 일원	1,339	증) 3.4	1,342.4	군산고329 (`11.10.28)	

○ 철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철도	· 면적변경 - 1,339 → 1,342.4m ² (증 3.4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4) 공 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90,906	증) 85.4	90,991.4		
소계					-	64,125	증) 94.7	64,219.7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미장동 52-15중 일원	10,235	증) 0.5	10,235.5	군산고329 (`11.10.28)	
변경	2	공원	근린공원	미장동 57-14답 일원	19,615	감) 11.7	19,603.3	군산고329 (`11.10.28)	
기정	3	공원	근린공원	미장동 59-35답 일원	10,340	-	10,340	군산고329 (`11.10.28)	
변경	4	공원	근린공원	조촌동 254답 일원	23,935	증) 105.9	24,040.9	군산고329 (`11.10.28)	
소계					-	16,623	감) 14.3	11,608.7	
변경	1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54-14답 일원	2,459	감) 2.7	2,456.3	군산고329 (`11.10.28)	
변경	2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58-23답 일원	1,560	감) 2.4	1,557.6	군산고329 (`11.10.28)	
기정	3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62-15답 일원	1,500	-	1,500.0	군산고329 (`11.10.28)	
변경	4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56-4답 일원	1,590	감) 1.4	1,588.6	군산고329 (`11.10.28)	
변경	5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64-33답 일원	2,515	감) 6.3	2,508.7	군산고329 (`11.10.28)	
변경	6	공원	어린이공원	미장동 60-12답 일원	1,999	감) 1.5	1,997.5		
소계					-	15,158	증) 5.0	15,163.0	
변경	1	공원	소공원	미장동 57-12답 일원	540	감) 2.6	537.4	군산고329 (`11.10.28)	
변경	2	공원	소공원	미장동 58-10답 일원	658	감) 1.6	656.4	군산고329 (`11.10.28)	
변경	3	공원	소공원	미장동 58-9답 일원	1,168	감) 5.1	1,162.9	군산고329 (`11.10.28)	
변경	4	공원	소공원	미장동 58-6답 일원	3,263	감) 7.7	3,255.3	군산고329 (`11.10.28)	
변경	5	공원	소공원	미장동 58-4답 일원	931	감) 1.8	929.2	군산고329 (`11.10.28)	
변경	6	공원	소공원	미장동 58-1답 일원	4,705	증) 23.8	4,728.8	군산고329 (`11.10.28)	
변경	7	공원	소공원	조촌동 253-3답 일원	1,317	감) 2.8	1,314.2	군산고329 (`11.10.28)	
변경	8	공원	소공원	미장동 456-20구일원	2,576	증) 2.8	2,578.8	군산고329 (`11.10.28)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근린공원1	공원	· 면적변경 - 10,235 → 10,235.5m ² (증 0.6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근린공원2	공원	· 면적변경 - 19,615 → 19,603.3m ² (감 11.7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근린공원4	공원	· 면적변경 - 23,935 → 24,040.9m ² (감 105.9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어린이공원1	공원	· 면적변경 - 2,459 → 2,456.3m ² (감 2.7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어린이공원2	공원	· 면적변경 - 1,560 → 1,557.6m ² (감 2.4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어린이공원4	공원	· 면적변경 - 1,590 → 1,588.6m ² (감 1.4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어린이공원5	공원	· 면적변경 - 2,515 → 2,508.7m ² (감 6.3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어린이공원6	공원	· 면적변경 - 1,999 → 1,997.5m ² (감 1.5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소공원1	공원	· 면적변경 - 540 → 537.4m ² (감 2.6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소공원2	공원	· 면적변경 - 658 → 656.4m ² (감 1.6m ²)	확정측량 결과반영
소공원3	공원	· 면적변경	확정측량 결과반영

		- 1,168 → 1,162.9㎡ (감 5.1㎡)	
소공원4	공원	· 면적변경 - 3,263 → 3,255.3㎡ (감 7.7㎡)	확정측량 결과반영
소공원5	공원	· 면적변경 - 931 → 929.2㎡ (감 1.8㎡)	확정측량 결과반영
소공원6	공원	· 면적변경 - 4,705 → 4,728.8㎡ (증 23.8㎡)	확정측량 결과반영
소공원7	공원	· 면적변경 - 1,317 → 1,314.2㎡ (감 2.8㎡)	확정측량 결과반영
소공원8	공원	· 면적변경 - 2,576 → 2,578.8㎡ (증 2.8㎡)	확정측량 결과반영

5) 녹 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	70,217 (4,750)	감) 10.1	70,206.9 (4,739.9)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미장동 59-39답 일원	2,154 (2,154)	감) 8.6	2,145.4 (2,145.4)	군산고329 (`11.10.28)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미장동 64-6대 일원	2,596 (2,154)	감) 1.5	2,594.5 (2,145.4)	군산고329 (`11.10.28)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조촌동 244-1전 일원	65,467 (0)	-	65,467 (0)	(`86.5.23)	

※ ()는 사업지구 내 면적임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완충녹지1	녹지	· 면적변경 - 2,154 → 2,145.4㎡ (감 8.6㎡)	확정측량 결과반영
완충녹지2	녹지	· 면적변경 - 2,596 → 2,594.5㎡ (감 1.5㎡)	확정측량 결과반영

6) 광 장(변경)

○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1,507	감) 0.1	1,506.9		
변경	1	광장	경관광장	조촌동 765-4대 일원	1,507	감) 0.1	1,506.9	군산고329 (`11.10.28)	

○ 광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광장	· 면적변경 - 1,507 → 1,506.9㎡ (감 0.1㎡)	확정측량 결과반영

7)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1,944	감) 5.8	1,938.2		
변경	1	공공공지	미장동 56-23답 일원	85	증) 0.6	85.6	군산고329 (`11.10.28)	
변경	2	공공공지	미장동 56-120답 일원	86	감) 0.1	85.9	군산고329	

							(`11.10.28)	
변경	3	공공공지	미장동 62-17답 일원	886	감) 3.1	882.9		
변경	4	공공공지	미장동 62-15답 일원	887	감) 3.2	883.8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공지	· 면적변경 - 85 → 85.6㎡ (증 0.6㎡)	확정측량 결과반영
2	공공공지	· 면적변경 - 86 → 85.9㎡ (감 0.1㎡)	확정측량 결과반영
3	공공공지	· 면적변경 - 886 → 882.9㎡ (감 3.1㎡)	확정측량 결과반영
4	공공공지	· 면적변경 - 887 → 883.8㎡ (감 3.2㎡)	확정측량 결과반영

8) 학 교(변경없음)

- 학교 결정 조서
- 계재 생략-

9)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	-	-	13,047	-	13,047		
변경	1	공공청사	주민센터	미장동 56-83답 일원	920	감) 0.4	919.6	군산고329 (`11.10.28)	
변경	2	공공청사	세무서	미장동 61-4답 일원	7,029	증) 0.4	7,029.4	군산고329 (`11.10.28)	
기정	3	공공청사	농림축산 검역본부	미장동 62-16 일원	5,098	-	5,098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공공청사1	공공청사	· 면적변경 - 920 → 919.6㎡ (감 0.4㎡)	확정측량 결과반영
공공청사2	공공청사	· 면적변경 - 7,029 → 7,029.4㎡ (증 0.4㎡)	확정측량 결과반영

10)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 조서
- 계재 생략-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 치	면 적(m ²)	
계	-	132,013	감) 100.2	131912.8	-	131912.8	
R	1	2,264	감) 1.0	2263.0			최소획지구모 (200m ²) 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 허용, 연접한 2개의 획지 합병 허용
	2	3,649	감) 0.3	3648.7			
	3	1,884	감) 0.5	1883.5			
	4	1,084	감) 0.1	1083.9			
	5	1,114	증) 0.4	1114.4			
	6	2,134	감) 4.1	2129.9			
	7	3,211	-	3211.0			
	8	3,207	감) 0.3	3206.7			
	9	1,731	감) 3.8	1727.2			
	10	2,165	증) 0.1	2165.1			
	11	2,382	감) 0.2	2381.8			
	12	3,115	증) 0.1	3115.1			
	13	3,137	감) 0.1	3136.9			
	14	2,407	감) 8.1	2398.9			
	15	1,930	증) 1.8	1931.8			
	16	1,931	감) 0.8	1930.2			
	17	1,922	감) 0.7	1921.3			
	18	1,276	감) 2.1	1273.9			
	19	1,911	증) 0.2	1911.2			
	20	1,917	감) 0.4	1916.6			
	21	1,918	감) 0.2	1917.8			
	22	1,518	증) 0.1	1518.1			
	23	1,615	감) 0.4	1614.6			
	24	2,679	감) 2.1	2676.9			
	25	2,672	감) 3.2	2668.8			
	26	2,672	감) 3.4	2668.6			
	27	2,672	감) 2.8	2669.2			
	28	2,746	감) 8.0	2738.0			
	29	2,734	증) 0.7	2734.7			
	30	1,315	-	1315.0			
	31	2,687	감) 3.1	2683.9			
	32	1,832	감) 2.9	1829.1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 치	면 적(m ²)	
R	33	1,843	감) 3.0	1,840.0			최소획지구모 (200m ²) 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 허용, 연접한 2개의 획지 합병 허용
	34	1,838	감) 3.4	1,834.6			
	35	1,828	감) 3.2	1,824.8			
	36	1,983	감) 3.4	1,979.6			
	37	1,983	감) 0.2	1,982.8			
	38	1,998	감) 1.2	1,996.8			
	39	2,010	감) 2.5	2,007.5			
	40	2,140	감) 4.1	2,135.9			
	41	2,138	감) 1.0	2,137.0			
	42	2,128	감) 0.6	2,127.4			
	43	2,119	감) 3.4	2,115.6			
	44	2,800	감) 2.7	2,797.3			
	45	2,792	증) 0.2	2,792.2			
	46	1,546	증) 1.3	1,547.3			
	47	2,914	감) 6.6	2,907.4			
	48	2,673	감) 1.5	2,671.5			

	49	2,667	감) 0.4	2,666.6		
	50	2,072	감) 0.4	2,071.6		
	51	2,687	감) 1.4	2,685.6		
	52	1,916	감) 1.4	1,914.6		
	53	1,932	감) 2.6	1,929.4		
	54	1,931	감) 5.3	1,925.7		
	55	1,923	감) 2.4	1,920.6		
	56	2,239	감) 1.0	2,238.0		
	57	894	감) 0.4	893.6		
	58	875	증) 1.6	876.6		
	59	2,242	감) 1.5	2,240.5		
	60	2,264	감) 4.0	2260		
	63	2,207	감) 0.5	2,206.5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은 환지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른다.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반영

2)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 치	면 적(㎡)	
계	-	146,378	감) 80.3	146,297.7	-	146,297.7	
A	1	24,373	감) 0.8	24,372.2			획지의 분할 불가 (단,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은 제외)
	2	47,309	-	47,309.0			
	3	39,138	감) 79.5	39,058.5			
	4	35,558	-	35,558.0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반영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 치	면 적(㎡)	
계	-	92,256	감) 141.4	92,114.6	-	92,114.6	
NC	1	1,510	증) 0.2	1,510.2			최소획지구모(330㎡) 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 허용, 연접한 2개의 획지 합병 허용
	2	1,653	감) 0.7	1,652.3			
	3	2,594	감) 8.4	2,585.6			
	4	3,622	감) 11.0	3,611.0			
	5	2,696	감) 4.8	2,691.2			
	6	1,927	감) 3.6	1,923.4			
	7	2,252	감) 6.2	2,245.8			
	8	1,920	감) 7.2	1,912.8			
	9	2,427	감) 10.0	2,417.0			
	10	1,905	증) 0.1	1,905.1			
	11	1,888	감) 4.8	1,883.2			
	12	1,925	감) 2.3	1,922.7			
	13	1,925	감) 2.2	1,922.8			
	14	1,916	감) 0.5	1,915.5			
	15	1,804	감) 5.1	1,798.9			
	16	3,282	감) 7.3	3,274.7			
	17	2,540	감) 1.6	2,538.4			
	18	2,622	감) 4.0	2,618.0			
	19	3,301	감) 7.7	3,293.3			
	20	2,399	감) 4.2	2,394.8			
	21	2,512	감) 0.3	2,511.7			
	22	2,431	감) 6.4	2,424.6			
	23	2,288	감) 4.1	2,283.9			
	24	1,767	감) 1.8	1,765.2			
	25	1,767	감) 3.1	1,763.9			
	26	1,767	감) 3.8	1,763.2			
	27	1,767	감) 4.2	1,762.8			
	28	1,652	감) 0.2	1,651.8			
	29	1,960	감) 1.3	1,958.7			
	30	2,008	감) 3.0	2,005.0			

31	1,708	감) 2.4	1,705.6		
32	2,614	감) 3.3	2,610.7		
33	2,098	감) 2.4	2,095.6		
34	2,031	감) 0.6	2,030.4		
35	2,589	감) 4.6	2,584.4		
36	4,093	감) 0.1	4,092.9		
37	1,250	-	1,250.0		
38	1,829	증) 0.1	1,829.1		
39	2,219	-	2,219.0		
40	836	-	836.0		
41	1,663	감) 3.2	1,659.8		
42	2,299	감) 5.4	2,293.6		
43	1,000	-	1,000.0		파출소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은 환지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른다.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반영

4) 준주거용지(변경)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 치	면 적(m ²)	
계	-	11,799	감) 17.2	11,781.8	-	11,781.8	
CE	1	4,067	감) 7.2	4,059.8			최소획지구모 (400m ²) 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 허용, 연접한 2개의 획지 합병 허용
	2	2,081	감) 2.5	2,078.5			
	3	2,081	감) 2.2	2,078.8			
	4	479	-	479.0			
	5	3,091	감) 5.3	3,085.7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은 환지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른다.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반영 및 기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라 CE5 가구형태 변경

5) 상업용지(변경)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 치	면 적(m ²)	
계	-	54,271	감) 70.6	54,200.4	-	54,200.4	
C1	1	4,357.0	감) 1.4	4,355.6			최소획지구모 (간선부상업용지:500m ² , 이면부상업용지:400m ²) 이상을 만족시 획지분할 허용, 연접한 2개의 획지 합병 허용
	2	4,383.0	감) 0.9	4,382.1			
	3	2,207.0	감) 3.5	2,203.5			
	4	3,766.0	감) 6.6	3,759.4			
	5	3,757.0	감) 6.1	3,750.9			
	6	4,842.0	감) 15.6	4,826.4			
C2	1	5,064	감) 5.2	5,058.8			
	2	3,654	감) 5.4	3,648.6			
	3	5,668	감) 2.3	5,665.7			
C3	1	2,472	감) 6.5	2,465.5			
	2	2,049	감) 2.5	2,046.5			
	3	2,045	감) 2.8	2,042.2			
	4	3,210	감) 5.7	3,204.3			
	5	2,074	감) 0.6	2,073.4			
	6	4,723	감) 5.5	4,717.5			

※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은 환지계획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른다.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반영

6) 공공청사용지(변경)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 치	면 적(m ²)	
계	-	13,047	-	13,047.0	-	13,047.0	
공청	1	920	감) 0.4	919.6			획지의 분할 불가
	2	7,029	증) 0.4	7,029.4			
	3	5,098	-	5,098.0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반영

7) 주차장용지(변경)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 치	면 적(m ²)	
계	-	9,422 (12,685)	감) 23.4	9,398.6 (12,661.6)	-	9,398.6 (12,661.6)	
주	1	446	증) 0.4	446.4			획지의 분할 불가
	2	542	증) 1.1	543.1			
	3	917	감) 1.9	915.1			
	4	(3,263)	-	(3,263)			
	5	1,056	감) 2.8	1,053.2			
	6	784	감) 1.8	782.2			
	7	784	감) 0.8	783.2			
	8	781	감) 4.9	776.1			
	9	782	감) 1.9	780.1			
	10	459	증) 0.6	459.6			
	11	484	감) 2.6	481.4			
	12	2,387	감) 8.8	2,378.2			

※ ()는 소공원4와 중복결정한 지하주차장 ‘주4’의 포함면적임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반영

8) 교육시설용지(변경없음)

-계재 생략-

9)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용지(변경)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 치	면 적(m ²)	
계	-	764	감) 3.8	760.2	-	760.2	
주유	1	764	감) 3.8	760.2		760.2	획지의 분할 불가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반영 및 기 인가된 환지계획에 따라 가구형태 변경

10) 종교시설용지(변경)

도면 표시 번호	가구 번호	면 적(m ²)			획 지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위 치	면 적(m ²)	
계	-	6,146	증) 2.0	6,148.0		6,148.0	
종	1	2,966	증) 3.3	2969.3			획지의 분할 불가
	2	1,322	감) 1.3	1320.7			
	3	1,858	-	1858			

※ 변경사유 : 확정측량 결과반영

11)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계재 생략-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계재 생략-

2) 공동주택용지(아파트)(변경없음)

-계재 생략-

3)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계재 생략-

4) 준주거용지(변경없음)

-계재 생략-

5) 상업용지(변경없음)

-계재 생략-

6)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가) 자동차관련시설(변경없음)

-계재 생략-

나) 공공청사(변경없음)

-계재 생략-

다) 교육시설(변경없음)

-계재 생략-

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관한사항(변경없음)

-계재 생략-

마) 종교시설(변경없음)

-계재 생략-

바) 공급처리시설(변경없음)

-계재 생략-

바.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 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계재 생략-

2) 공동주택용지(아파트)(변경없음)

-계재 생략-

3) 근린생활시설(변경없음)

-계재 생략-

4) 준주거용지(변경없음)

-계재 생략-

5) 상업용지(변경없음)

-계재 생략-

6)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없음)

-계재 생략-

<별표1>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변경없음)

-계재 생략-

<별표2> 공동주택용지의 규모·용적률·세대수·높이(변경없음)

-계재 생략-

<별표3> 일반상업용지 용도분류표(변경없음)

-계재 생략-

7.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공람기간 : 고시한 날로부터 14일간

○ 공람장소 : 군산시청 공영사업과(063-454-366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임

(관계도서:도면포함, 계재 생략)

군산시 공고 제2016-1844호

군산 도시시계획시설(완충녹지)사업 실시계획 인가전 열람공고

군산시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사업 시행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군 산 시 장

1.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16. 10. 28. ~ '16. 11. 11.)

2. 열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3. 사업의 개요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군산시 내초동 96-7번지의 1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완충녹지)사업

2) 명 칭 : 내초동 완충녹지 조성공사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538㎡

라.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1) 사업시행자 성명 : (유)씨앤엘개발

2)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새만금북로 519(내초동)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 2017. 10. 31.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내초동 96-7	임	300	300	이용일	전주시 완산구 오공로 100, 301동 703호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나운동지점)	
2	내초동 96-8	임	238	238	(유)씨앤엘개발	군산시 새만금북로 519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 1가(나운동지점)	

5.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에 관한 사항 : 상기 편입토지 및 시설물(완충녹지)

6.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T.063-454-35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6-1853호

임대조건(변경)신고 공고

2016년 7월 1일부터 동년 9월 30일 동안 종전의 임대주택법 제26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의거 처리된 임대조건(변경)신고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10. 26.
군 산 시 장

공고기간 : 2016. 10. 26. ~ 2016. 10. 31.

1.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501 현대아파트 301동 701호

임대사업자	성 명 고*아 (대표자) 이*호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 소(사무소 소재지) 부산 해운대구 대천로 103번길61, 102동2001호(좌동,엘지해운대아파트)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501 현대아파트 301동 701호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59.95㎡	1				80,000,000		
	합 계		1			80,00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6-08-23 ~ 2018-08-22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2.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 202동 603호(나운동, 세경아파트)

임대사업자	성 명 임*관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 소(사무소 소재지)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320, 1016동1102호(하안동,고층주공아파트)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 202동 603호 (나운동, 세경아파트)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53.82㎡	1	39,710			5,000,000		300,000
	합 계		1	39,710		5,000,000	30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6-05-31 ~ 2018-05-30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3.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하나운로 28, 207동 407호(나운동, 세경아파트)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임*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35, 220동2702호(잠실동,리센츠)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하나운로 28, 207동 407호 (나운동, 세경아파트)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53.82㎡	1				4,000,000	280,000	
	합 계	1				4,000,000	28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6-03-20 ~ 2018-03-19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4. 전라북도 군산시 계산로 90, 102동 1601호(지곡동, 현대엠코타운)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이*천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군산시 백토로 242, 305동1101호 (나운동,롯데아파트)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계산로 90, 102동 1601호 (지곡동,현대엠코타운)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59㎡	1				30,000,000	300,000	
	합 계	1				30,000,000	30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6-05-17 ~ 2017-03-24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5.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137, 101동 502호(나운동, 영창아파트)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김*철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서울 중랑구 신내로17길 41, 702동1102호 (신내동,진로아파트)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의료원로 137, 101동 502호(나운동,영창아파트)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59.94㎡	1				90,000,000		
	합계	1				90,00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6-08-12 ~ 2018-08-11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6.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0, 103동 1208호(나운동, 한울아파트)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김*철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서울 중랑구 신내로17길 41, 702동1102호 (신내동,진로아파트)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0, 103동 1208호(나운동, 한울아파트)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59.73㎡	1				75,000,000		
	합계	1				75,00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6-07-21 ~ 2018-07-20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7.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606, 205동 806호(소룡동, 소룡동제이파크)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김*철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서울 중랑구 신내로17길 41, 702동1102호 (신내동,진로아파트)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606, 205동 806호(소룡동, 소룡동제이파크)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59.95㎡	1				75,000,000	
	합계	1				75,00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6-07-25 ~ 2018-07-24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8.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2길 8, 102동 1401호(수송동, 스타펠리스)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원*영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군산시 나포면 십자들로 778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진포2길 8, 102동 1401호(수송동, 스타펠리스)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29.458㎡	1				10,000,000	400,000
	합계	1				10,000,000	40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6-10-01 ~ 2017-09-30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9.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안2길 23-15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재단)단석***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서울 서초구 효령로 266, 3층(서초동, 태원빌딩)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요죽안2길 23-15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390.23㎡	1				160,000,000	1,027,250	
	합계	1				160,000,000	1,027,250	
	임대차 계약기간	- 2016-03-10 ~ 2017-03-09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10.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 201동 1501호(나운동, 세경아파트)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김*숙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울산 중구 함월로 50, 201호(성안동,희재아파트)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 201동 1501호(나운동, 세경아파트)						
	주택 유형	아파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49.58㎡	1	25,680			17,010,000	100,000	
	합계	1	25,680			17,010,000	10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6-02-01 ~ 2018-01-31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11.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 206동 606호(나운동, 세경아파트)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김*숙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비고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울산 중구 함월로 50, 201호(성안동,희재아이브)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 206동 606호(나운동, 세경아파트)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53.82㎡	1	45,000			12,140,000	260,000	
	합계	1	45,000			12,140,000	26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6-06-01 ~ 2017-05-31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12.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 205동 202호(나운동, 세경아파트)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김*숙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비고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울산 중구 함월로 50, 201호(성안동,희재아이브)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 205동 202호(나운동, 세경아파트)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53.82㎡	1				65,000,000		
	합계	1				65,00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6-05-28 ~ 2018-05-27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13.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 207동 607호(나운동, 세경아파트)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김*옥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울산 남구 수암로 196(아음동)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 207동 607호(나운동, 세경아파트)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53.82㎡	1				65,000,000	
	합계	1				65,00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6-05-04 ~ 2018-05-03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14.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 206동 206호(나운동, 세경아파트)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김*옥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울산 남구 수암로 196(아음동)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 206동 206호(나운동, 세경아파트)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53.82㎡	1				65,000,000	
	합계	1				65,00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6-02-29 ~ 2018-02-28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15.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 207동 102호(나운동, 세경아파트)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김*옥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울산 남구 수암로 196(아음동)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 207동 102호(나운동, 세경아파트)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53.82㎡	1	57,120			10,000,000	350,000	
	합계	1	57,120			10,000,000	35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6-04-08 ~ 2018-04-07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16.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 204동 108호(나운동, 세경아파트)

임대사업자	성명 (대표자)	유*희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주소(사무소 소재지)		울산 남구 수암로 196(아음동)					
임대 주택	주택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하나운로 28, 204동 108호(나운동, 세경아파트)						
	주택 유형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						
임대 조건	세대수			표준임대조건		전환임대조건 (실제임대조건)		비고
	구분	세대	세대당 대출금(천원)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임대보증금	임대료(월)	
	53.82㎡	1				63,000,000		
	합계	1				63,000,000		
	임대차 계약기간	- 2016-03-15 ~ 2018-03-01						
	분양전환시기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